

2025

통합26차 정기총회

(21차 대의원총회)

● 일시 : 2025년 02월 22일(토) 오후 2시

● 장소 :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5, 안산도서관 시청각실



총회 진행순서

[제 1부 기념식]

- 건강체조
- 개식선언
- 생명의례
- 영상시청
- 이사장 인사
- 시상
- 폐식 선언
- 기념촬영

[제 2부 정기총회]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인과 서기선임
- 경과보고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의사일정 확인
- 안건 심의
- 폐회 선언

자료집 목차

	건강성의	<u>5</u>
	설립이념, 정관 전문	<u>6</u>
	기념사	6 7 8 9
	축사	<u>8</u>
	조합 연혁	9
	조합 현황	<u>15</u>
	시상	<u>18</u>
	경과보고	<u>21</u>
	전차의사록	<u>22</u>
	상정의안 순서	<u>27</u>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u>29</u>
제2호 의안	2024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u>35</u>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u>39</u>
제4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u>43</u>
	I 사업 보고	<u>45</u>
	Ⅱ사업 실적	
	1. 설립이념에 따른 2024년도 사업 실적	<u>48</u>
	2. 정관에 따른 2024년도 사업 실적	<u>50</u>
	3.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적	
	1) 일차의료센터 사업보고	<u>53</u>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보고	<u>57</u>
	3) 통합돌봄사업본부(주간보호센터, 조합원건강이음센터)	<u>63</u>
	4) 경영지원실	<u>82</u>
	Ⅲ 결산 보고(안)	
	1. 결산 보고 총평	<u>83</u>
	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u>84</u>
	3. 주요 결산 실적	<u>85</u>
	4. 자본 결산	<u>86</u>
	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u>87</u>
	6. 손익계산서	
	1) 통합 손익계산서	<u>89</u>
	7. 부서별 손익계산서	<u>91</u>
	8. 예산 대비 집행계산서	<u>95</u>

제5호 의안	2024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u>97</u>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99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u>101</u>
	정관 변경 사유	<u>103</u>
	정관 변경(안) 신구대조표	<u>104</u>
제7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u>107</u>
	I 2025년도 사업계획(안)	<u>109</u>
	4. 6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u>111</u>
	5.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i . 의료사업본부	
	1) 일차의료센터(의원, 검진센터, 한의원, 치과)	<u>112</u>
	2) 다학제지원팀	<u>116</u>
	3) 방문의료센터	<u>117</u>
	ii . 돌봄사업본부	
	1) 요양원	<u>119</u>
	2) 주간보호센터	<u>120</u>
	3) 재가복지센터	<u>121</u>
	4) 지역돌봄팀	<u>122</u>
	ⅲ. 경영지원실	<u>126</u>
	I 2025년도 사업예산(안)	
	1. 2025년도 예산 수립 기조	<u>128</u>
	2. 예산 총칙	<u>129</u>
	3. 단위부서별 2025년 예산(안)(2024년도 결산 대비)	<u>130</u>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u>139</u>
	2024년 차입금 내역 및 상환 계획	<u>141</u>
기타	특별결의	
	노인요양원 설립 특별결의	<u>145</u>
부록	정관	<u>147</u>
	규약	165



- 1. 건강정의
- 2. 설립이념, 정관 전문
- 3. 기념사
- 4. 연혁 및 현황
- 5. 시상

●● 건강 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WHO. 2000>

●● 건강 약속

우리는, 아플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와 이웃과 지구의 건강이 하나임을 압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살피며 이웃과 사회가 아플 때 손 내밀어 봅니다.

생명,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도록 건강한 세상을 향해 마음 모아 함께 나아갑니다. <2015. 10. 05 제정, 2018. 01. 17 1차 개정, 2024 .09. 07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다.

●● 설립이념, 정관 전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설 립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이 념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 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창립하였다.

정

과

_.

저

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기념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석연회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과 조합원 그리고 축하를 위해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끄러운 국가 현실, 예전과 다른 폭설과 추위, 걱정과 염려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개인의 돌봄을 넘어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라는 민들레의 구호가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해집니다.

민들레는 2001년 20여 명이 준비위를 결성했고 2002년 발기인 50명이 희망으로 창립하여 어두운 터널을 여러 번 통과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긴 이름만큼 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지역의 통합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대덕구를 넘어 대전시 전반에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염원으로 2022년에 문을 연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안정적이고 민들레 가치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직원들의 노력,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 그리고 봉사 덕분입니다.

2024년 민들레는 코로나19로 끊어졌던 관계를 복원하는 목표로 조직을 개편하여 "민들레이음센터"를 만들고 "민들레가 있다", "조합원을 잇다", "외로움을 잊다"라는 슬로건으로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조합원과 조합 연결, 조합원과 조합원 연결 등으로 외로움을 잊는 조합활동을 하였습니다. 개인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민들레가 주치의 역할도 톡톡히 하였습니다.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민들레가 소원하는 요양원을 만들 씨앗자금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를 넘어 돌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들레의 요양원 설립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돌봄영역의 확장으로 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들어갈 민들레형 요양원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2025년 민들레는 의료와 돌봄의 영역으로 조직도 개편하였습니다. 민들레가 처음 맘 먹었던 믿을만한 의료 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을 넘어 "좋은 의료"와 "좋은 돌봄"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조합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꼼꼼하게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과 대의원 그리고 이사님들의 역할과 관심, 그리고 참여가 매우 필요한 2025년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2025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존경하는 민들레의료사협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입니다. 의료사협 총회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작년 12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시민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건강불평등에서 나타나듯 의료는 사회불평등과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구 구성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이들 질환이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기존질환 악화 및 중증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6.7%로, 그 규모는 526만 명에 달합니다. 당뇨병은 초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김창엽 교수팀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동 시간 30분 이내에 당뇨병 진료 기관이 없는 읍면동은 총 20개 지역이었습니다. 해당 읍면동은 인천 중구·강화, 경기 연천, 강원 삼착·홍천·정선·양구·인제, 전북 군산, 전남 고흥, 경북 김천·안동·문경·울진, 경남 거창총 15개 시군구에 속했습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고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돌봄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습니다.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대란과 정치적인 혼란마저 지속되면서,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행될지 참으로 우려가 큽니다.

의료사협은 시민의 참여로 의료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지역사회의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어오는데 힘을 쏟아왔고, 우리 사회에서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주치의제를 미리 시행해 왔으며, 민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입법 등 우리 사회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의료사협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차의료가 취약한 곳에 지역주민이 의료사협을 조직하여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을 열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나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돌봄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협을 통해 시민이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힘있게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와의 민관협력을 이끌어내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불평등 심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담을의료사협이 창립되고, 건강주치의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료사협이 건강취약지역에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통합돌봄을 힘차게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곧 이 혼란을 정리하고 힘차게 날아 올라갈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살아오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날을 꿈꿔 봅니다. 이제 여러분과 새로운 비전에 도전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1. 민들대의료목시사외직업공소압 언덕			
2001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회원 8명 민들 ■민들레의료생협 준비위원회 결성(20		
2002 "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	■ 민들레의원, 한의원 개원 ■ 발기인 대회(발기인 50명, 대표 김조년) ■ 창립총회(조합원303명, 이사장 김조년) ■ 소식지 창간호 '민들레'		
"주치의 사업의 기반 마련,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한 조합운영, 진료권 내 중심을 둔조합활동"	■ 홈헬퍼 파견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동체 화폐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조합원 가족주치의, 법동품앗이, 민들레 학교"	■일본 아마가사끼 의료생협 방문 환영회 ■법동품앗이 창립		
2005 "체조하고 걷는 해"	■ 건강실천단 발대식만걸음 걷기 행사(계족산) ■ 새터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운동회 ■ 민들레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		
2006 "체조하고 걷는 해"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 ■한국의료생협연대 개소식 ■민들레의원 1층 이전	■전화상담 민들레 교육훈련 ■공동체 자원활동가 교육훈련 ■치과 개원	
2007 "걷고 체조하고 자전거타는 해"	■월평공원-갑천 생태계지키기 시민대책위 ■「공생공빈」저자 스찌다 다카시 초청강연회 ■암치유 전략워크숍(나준식) ■공동생협학교		
2008 "지구와 함께 건강해지는 해"	■태안 자원활동 ■건강실천단 발대식 ■한의원 뜸 전략 기획단 ■슬로건 만들기 대의원 워크숍	■창립 6주년 등반대회 ■건강캠프 '오약사 따라잡기' ■소액금융자원 약정체결(시회투자자원재단) ■의료생협 서비스 품질 워크숍	
2009 "건강증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해"	■일본 미나미의료생협 방문 및 교류회 ■제1차 이용자 간담회 ■건강증진실 개소 ■창립7주년 야간산행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보건분야 개강 ■호숫가품앗이가게 개소식 ■노인복지센터 이전개소식		
2010 "건강한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 해"	■일본 / 일본의료생협 연수 ■건강검진센터 개소	■비영리경영컨퍼런스 ■가정간호사업소 개소	
2011 "조합원이 함께 민들레를 세우는 해"	■건강검진협약(세이브더칠드런 등) ■대전지역생협연대 공동산행 ■조합원 방문의 날	■제2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 ■임시대의원 총회(둔산진출) ■ 둔산민들레 추진위원회	

2012	"새로운 10년을 펼치는 해"	■ 둔산민들레 개원 ■ 황성수 박사 초청 특강 ■ 한미FTA 폐기 동네촛불 ■ 현미채식건강실천단 ■ iCOOP 씨앗기금 전달식 ■ 조합원 제안사업 ■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 ■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 ■ 치과진료협약(굿네이버스) ■ 여성새일센터 협약 ■ 여성친화기업 인증 ■ 대덕치과 이전	
2013	<i>"</i>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민들레-한밭생협 세화강좌 ■씨앗기금 협약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가입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환 창립 ■의료생협 현지 조사 참여(보건복지부)	
2014	<i>"</i> 조합원과 더 많이 만나는 해"	■좋은 이사 학교 ■장애인부모연대 치과치료협약 ■임시총회(건물매입) ■세상콘테스트 성장기부문 수상 ■건물 매입 계약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 ■민들레 방문의 날(비영리협동조합연대)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자 방문 ■건물 매입을 위한 조합원행사 진행(구별) ■건강의 집 담당자 교육 ■사회공헌 한마당 참여	
2015	"흑자경영 원년"	■ SK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 홈커밍데이 ■ 건강나눔터 "바르게 걷기" ■ 전국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어린이집)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문제해결 기술연구 리빙랩사업 선정(연구재단) ■ 건물 매입 완료	
2016	"건강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해"	■ 연물 매업 완료 ■ 예비 이사학교 ■ 1기 건강조직가 양성과정 ■ 유성구 진잠동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 리빙랩-당뇨자조모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 노인의료복지연구모임 ■ 아동여성안전병원 협약(대전광역시) ■ '청춘은행' 시스템 구축 ■ 스포츠의학센터 개소 ■ 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 여성친화기업 인증(대전광역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	

■드림터 청소년 희망멘토 사업장 인증(대동종합사회복지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개소 "주민참여 보건의료혁신을 ■지역사회주도형노인건강돌봄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 통한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사회격차해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재단) 주도해가는 해"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가꾸자 사업(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청소년 진로 동기강화 및 성숙도 향상 기여 감사장(대동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R&D, 비R&D분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케어 일본연수(치바) "대덕구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스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연수(후쿠오카) 2018 단계적 준비 및 건강리더,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 건강반 조직을 통한 ■법동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주민건강자치력 향상" ■일본케어매니저제도와 교육과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벤치마킹 연수 (이바라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관 협력 협약(대덕구청) ■건강리더양성과정(5개 기수) 36명 수료, 청소년 건강리더(1개 기수) 18명 수료 ■민들레-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업무협약 ■2019년도 건강반 46개 승인 및 반장설명회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의만남 마주봄 엑스포개최 ■10기,1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시작 ■한울야학 장애인 건강교육 진행(장애인주치의사업)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 교육 및 영상제작 활용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2019 ■ 둔산치과 사업종료 만드는 해" ■ICT기술 활용한 노인치매·낙상예방'펀펀'활동 ■건강자원조사위한 동네돌봄단 활동 시작 ■ 중장년남성위한 꽃중년 건강리더양성과정 ■케어매니저양성 기초교육과정개설 ■장애인체력측정,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금연상담, 건강의달인 프로그램

■2019 건강반 축제 개최 ■민들레대의원 씨앗모임 ■제8기 민들레대의원선거

2020	"민들레형 동네 돌봄을 만드는 해"	■지역사회의료센터 개설,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협동조합 창업지원 ■13기, 14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수료 ■제8기 대의원 자치회 단합대회 개최, 모임 활동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2단계 시작 ■민들레만의 방문의료특화사업 '재활, 구강,예쁜발 프로젝트'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지원 ICT통합솔루션 개발사업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지역사회통합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을 부탁해" ■대전대와 케어매니저 양성 심화교육 ■조합원 4천명 돌파 (4,008세대 달성)
2021	"민들레형 동네 <u>돌봄을</u> 견고히 하는 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승인(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15기, 16기, 17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수료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 업무협약 (대덕구보건소,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당뇨병, 천식 적정성 평가 양호기관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연계 모델 개발 협약(충남대학교) ■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사무」운영 위,수탁 협약(대덕구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노동부, 대덕구청) ■병역명문가 업무협약(대전충남지방병무청)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대덕구청)
2022	"민들레형 동네돌봄을 확장 하는 해"	■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설립추진"대의원, 조합원 웨비나 개최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설립 출자/기부 캠페인 ■건강반 55개 승인 ■임원 워크숍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대덕구공동체한마당" 참여 ■제18, 19기 건강리더 수료 ■민들레꽃나눔반 발족 ■주간보호센터건립조합원추진위원회 활동 마무리 작은 만찬 ■조합 창립20주년 조합원 설문조사 ■창립20주년 기념 떡나눔 행사 ■건강-UP, 행복-UP 건강마을축제 ■대전시청 "여성친화기업" 협약 ■9기 대의원 선출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 ■대덕구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민들레 송년축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사회서비스 및 시제품 개발 성과보고회" 개최 ■민들레주간보호센터 개소식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헬스케어서비스"(보건복지부 우수상)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종료

■자원활동가 교육(민들레주간보호센터) ■민들레통합돌봄유성본부 개소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대덕구) ■보훈대상자 등 방문진료지원사업 업무협약(대덕구 등)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협약(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조합원 "안성의료사협" 탐방 ■의료사협 정기감사(보건복지부) ■구강관리교육 실시(민들레치과) ■D-cafe(치매관련 교육, 정보 교류) 개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 개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 개최 ■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민들레주간보호센터)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실습 ■종합건강검진 협약(대전엑스포로타리클럽) ■재택의료, 임종케어 관련 인터뷰(일본 나고야 교수) ■조합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장애인 건강주치의 간담회 개최(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어르신 야외나들이 진행(민들레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홍보드라마 2탄 촬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유공 송지혜원장 표창(보건복지부) ■소상공인조합원 대상 "어부바 건강주치의" 진행(한빛신협협동조합) ■장애인 건강인증프로그램 진행 ■강원대 보건과학대학 지역사회통합돌봄 현장견학 ■무주 안성고 보건동아리 현장견학	2023	"조합원 건강자치력 향상"	■민들레통합돌봄유성본부 개소 ■대덕형 마을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대덕구) ■보훈대상자 등 방문진료지원사업 업무협약(대덕구 등)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협약(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우리동네 맞춤형 "행복상담소" 참여 ■조합원 "안성의료사협" 탐방 ■의료사협 정기감사(보건복지부) ■구강관리교육 실시(민들레치과) ■마-cafe(치매관련 교육, 정보 교류) 개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 개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설명회 개최 ■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민들레주간보호센터)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실습 ■종합건강검진 협약(대전엑스포로타리클럽) ■재택의료, 임종케어 관련 인터뷰(일본 나고야 교수) ■조합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장애인 건강주치의 간담회 개최(대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어르신 야외나들이 진행(민들레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홍보드라마 2탄 촬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활성화 유공 송지혜원장 표창(보건복지부) ■소상공인조합원 대상 "어부바 건강주치의" 진행(한빛신협협동조합) ■장애인 건강인증프로그램 진행 ■강원대 보건과학대학 지역사회통합돌봄 현장견학

		■치매이해학교 진행
		■글로벌 보조금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기 지원사업(대전엑스포로타리클럽)
		■고령자 건강 커뮤니티 케어 솔루션 고도화 개발, 효과적 운영 업무 협약
		(봄소프트)
		■상반기 신입조합원 교육 23명 참여
		■글로컬대학30사업 보건인재양성 업무 협약(대전보건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수행기관 업무 협약(유성구청)
		■제주MBC 5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촬영/취재
		■ 응급처지(CPR)교육(대덕구소방서)
0004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서로돌봄 건강리더 교육
2024	미래를 준비하는 해"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사외복지공동모금회)
		■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업 참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반과 함께하는 계족산 걷기대회 개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십) 참여(대전보건대)
		■산학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헬스케어 인재양성 업무 협약(대전대)
		■대의원 만남의 날 개최(22명 참여)
		■민들레 건강체조 촬영
		■하반기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7명 참여)
		■민들레송년회 및 건강반 축제 개최
		■고혈압 적정성 평가(1등금), 당뇨병 적정성 평가(2등급)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

	주요 수상, 인증 니	내 역
연 도	내 용	대 상 자
2011	우수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장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2	우수 사회적기업 대통령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3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창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5	우수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7	우수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민들레의료사협 조세종 감사
2018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민들레의료사협 나준식 이사장
2019	사회적경제 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9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기여' 공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민들레의료사협 나준식 이사장 민들레건강검진센터 허애령 원장
2019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기업인증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장 표창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남은순 팀장
2020	'국민보건 향상 공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이경민 팀장
2020	'동네돌봄 활성화' 기여 대덕구청장 표창	민들레지역사회의료센터 박지영 센터장
202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기여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국현정 센터장
2021	사회적경제 유공자 정부포상 산업포장 대통령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나준식 이사장
2021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발전'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역사회의료센터 박지영 센터장
2023	'장애인 건강증진' 기여 보건복지부 장관	민들레의원 송지혜 원장
2023	'나눔과 봉사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민관협렵 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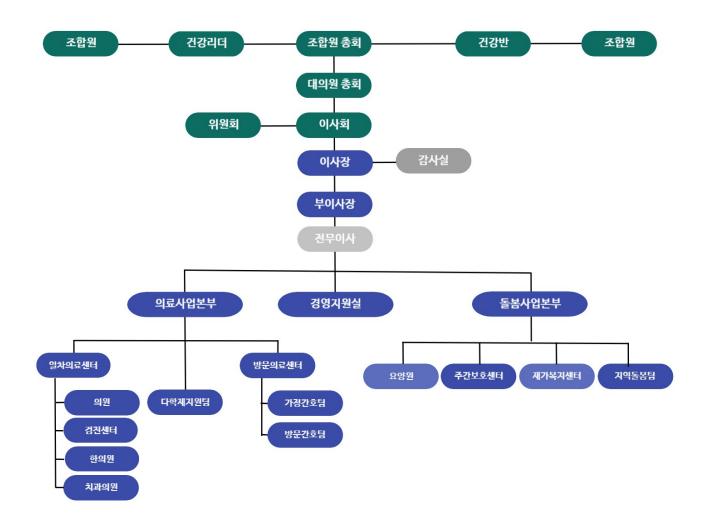
	2024년도 수상내역		
일 자	내 용	대 상 자	
2024.12.1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업사업 제도 발전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민들레의료의료사협 민들레의원	
2024.12.20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권 향상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민들레의원 나준식 원장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 기본 현황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조합원(세대)	4,714	4,583	4,402
출자금(원)	1,252,060,000	1,409,370,000	1,504,100,000
총 자산(원)	3,291,114,783	3,326,122,600	3,325,301,945
직원(명)	61	57	47

2) 조직도



3) 9기 대의원 명단(총 104명)

유형	대의원
소비자조합원 (50명)	강미영 고달숙 공옥순 권인호 김경언 김경희 김복남 김순영 김영순 김윤영 김정호 김종민 김준형 김찬옥 김창원 김창일 김화정 남은순 박미앙 박영기 박주희 박지은 박천경 배은열 백옥현 서은영 석연희 설진숙 신철순 오민우 유승화 유인수 이경선 이미선 이선아 이원표 이원호 장은종 전인수 정복희 정연희 정운재 조 현 채계순 추경미 한경이 한선희 함보현 홍은영 황대관
직원조합원 (21명)	국현정 김혜원 나준식 박윤민 박종희 박현주 박혜란 신현정 양영미 윤미경 이경민 이미순 이연서 이옥희 이자우 이지명 임영신 장하림 최수이 한선영 허애령
자원봉사조합원 (25명)	김성욱 김연준 김태순 노복희 박명수 배선부 배현옥 봉미경 서화자 석희옥 송직근 오경예 유성현 이경옥 이근화 이정자 임남희 장은영 전성옥 전종훈 정용철 주웅식 천재경 최윤나 최진훈
후원자조합원 (8명)	문진식 박병철 신연순 신정은 신지혜 이기업 정종한 최윤정

4) 기부금 참여 현황 -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2024.12.31.)

えいい	스스로	스스로조합비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	
총액(원)	회원수(명)	금액(원)	기부건수	금액(원)	비고
36,961,000	234	32,750,000	61	4,211,000	

o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자 명단 (2024.12.31.)

강봉해 강수환 강윤희 강종예 강한필 고광현 고명호 고미경 곽성자 국현정 권기철 권지명 권지연 권지훈 권혁신 길인숙 김경화 김경희 김기운 김동석 김미선 김미영 김미자 김민성 김민희 김병조 김봉기 김선미 김성훈 김세진 김수경 김연아 김영례 김영선 김영준 김용환 김윤섭 김은영 김인숙 김정희 김진호 김찬옥 김태현 김현미 김현숙 김현영 김현조 김현주 김현태 김형근 김형력 김혜원 김화준 김희형 나성은 나준식 남은순 남해성 문진식 문희균 박명구 박명연 박명화 박병철 박봉희 박언아 박영민 박영철 박유경 박유미 박재연 박종금 박종혁 박종희 박종희 박주희 박준규 박지숙 박지영 박진희 박태일 박현주 박혜란 배은열 백계경 백미순 백수홍 백양순 백유선 백종범 백희정 봉미경 서동애 석연희 석필환 선재규 성광진 손복희 손태희 송순옥 송영삼 송영숙 송지현 송지혜 송직근 신소연 신연순 신옥영 신원선 신원식 신지혜 신현정 심정희 안영섭 안혜영 양봉석 양영미 엄기정 여인표 오민우 오정분 오현우 원종승 유선화 유승화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윤대진 윤명숙 윤미경 윤자윤 윤주현 이경민 이기순 이기업 이동준 이미순 이민영 이봉선 이비단모래 이상녀 이선아 이선화 이성현 이소자 이연서 이영숙 이영숙 이영우 이영자 이옥희 이용화 이우림 이자우 이정례 이종원 이종현 이주선 이지명 이진미 이진숙 이효숙 이효진 임영신 임은경 임인선 임종윤 장기홍 장돈경 장병천 장윤희 장재민 장재우 장진호 장현미 장현선 전성옥 전송희 전홍주 정금분 정나현 정연희 정운재 정원미 정유진 정인숙 정종한 정현숙 정혜석 조경수 조병민 조선기 조세종 조영국 조혜연 조희중 주웅식 채유희 천재경 최기수 최소영 최수이 최순례 최승남 최영태 최윤정 최은남 최채옥 최태진 최혜경 추경미 한명순 한선희 한혜진 허기명 허애령 허 연 허영란 홍미옥 홍완기 홍윤경 홍은영 홍종순 홍춘기 홍향미 황근하 황선희 황신애 황 용 황인식 황정인 황정현 (총 234명)

o 일반기부금 납부실적

개인(9명)

김갑배 김춘식 나준식 남기동 박호연 석희옥 양혜정 이경민 이재연 전경찬 허기명 허애령

3. 수상

분야	수 상 자	수 상 이 유
	유 해 철	유해철 조합원은 적극적인 건강반 활동으로 스스로와 주변의 건강증진과 의원 및 주간보호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한 서로돌봄에 힘썼습니다. 지역사회안에 민들레가 '있게' 해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민들레가	윤 문 현 임 애 국	윤문현, 임애국 조합원은 건강반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증진과 이웃들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며 예방활동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며 지역사회안에 민들레가 '있게' 해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_ , 있다,	이 충 재	이충재 조합원은 적극적인 건강반 활동으로 건강반원 및 주변과의 관계형성에 힘썼으며, 의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기증을 통해 지역사회안에 민들레가 '있게' 해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공 민 우	공민우님은 민들레주간보호센터 봉사활동 인연을 이어 민들레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작업치료와 지역사회재활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안에 민들레가 '있게' 해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조합원을	노 태 식	노태식 조합원은 '건강반과 함께하는 걷기행사' 추진위원장과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앞장서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독려 활동을 해왔습니다. 민들레와 조합원을 '잇는데' 힘썼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입다'	임 명 복	임명복 조합원은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돌봄부담과 돌봄공백을 봉사활동으로 줄어들게 함으로서 민들레와 조합원, 지역사회 사이의 이어짐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하며 민들레와 조합원을 '잇는데' 힘썼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외로움을 '잊다'	김 순 미	김순미 조합원은 간호사로 방문진료 활동을 하며 환경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물품등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웃의 외로움과 힘듦을함께 나누며 추운겨울을 '잊게' 만들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서로건강돌봄 봉사단	서로건강돌봄 봉사단은 2024년 서로돌봄 건강리더 교육을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지역 내 장애가 있는 조합원, 주민 등이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활동을 이어나가며 서로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데 함께하여 외로움을 '잊게' 만들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1. 경과보고
- 2. 전차 의사록

1. 통합26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경과보고

2024. 12. 10.	[이사회] 1) 총회준비 관련 논의의 건
2025. 1. 8.(수)	[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위원회 소개 및 위원장 선출(위원장 : 노태식 조합원) 및 간사 선임 2) 기념식 및 시상안 등 논의
2025. 2. 3.(월)	[공고] 1) 통합26차(21차 대의원총회) 정기총회 공고 o 일시/장소: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2시, 안산도서관 시청각실
2025. 2. 5.(수)	[총회준비위원회] 1) 안건토의 o 시상안, 사업보고안 검토,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 제안 등
2025. 2. 7.(금)	[사업감사]
2025. 2. 11.(화)	[출자금 고지] 1) 조합원 출자금 고지 문자 발송
2025. 2. 12.(수)	[이사회, 확대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의 건
2025. 2. 14.(금)	[회계감사]
2025. 2. 22.(토)	통합26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2. 전차의사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필: 의장 석연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5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5차 정기총회(제20차 대의원총회)

2. 공 고 일 : 2024년 2월 1일(목)

3. 개최일시 : 2024년 2월 24일(토) 오후2시00분(기념식), 오후2시45분~오후4시12분(정기총회)

4. 개최장소: 대전 대덕구 중리서로 83(중리동)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5. 정기총회 의장 : 석연희 이사장

가. 성원 확인

의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송직근 전무이사가 총원 105명 중 참석 53명임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 과반이상 참석으로 본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선포하다.

나. 개회 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2시 45분에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 및 서명날인인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서기로는 남은순 대의원, 백종범 조합원을 서명날인인으로 박천경, 임 영신, 신현정 대의원을 선임하고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 동의와 재청을 통해 서 기와 서명날인인을 선임하다.

라. 경과 보고

의장이 정관, 규약,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주문하다.

이에 신지혜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자료집 21쪽을 안내하며 2023년 10월 이사회 승인으로 총회준비위 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차 회의를 진행한 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이 오늘의 이 회의가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개최됨을 선포하다.

마. 전차의사록 승인

의장이 지난 통합24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 의사록 낭독을 요청하다. 김찬옥 대의원이 낭독 대신 자료집 22~26쪽 전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서면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였으며 의장이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전차 의사록을 승인하다.

바. 의사일정 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27쪽에 상정된 의안 순서에 대한 처리 순서와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 대의 원에게 확인하다. 원안대로 총회 의사일정을 참석한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사.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2023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사업부문 감사에서 박봉희 감사가 자료집 31~32쪽의 내용을 낭독하며 감사보고를 하다.

2023년 매출액 증대 및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경영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 가치 실현, 조합 원 주체 세우기와 참여 등 균형적 성장을 위해 보완과 제안을 함께 보고하다.

회계부문 감사에서 김정호 감사가 자료집 33쪽을 참고하여 상·하반기 회계감사일과 당기순이익 82,948,034 원 달성 및 권고사항을 함께 보고하다.

의장이 대의원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고 홍은영 대의원의 동의, 허애령 대의원의 재청, 참석 대의원 다수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 후 감사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2) 제2호 의안: 2023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연서 총무회계팀장이 자료집 35~37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박미 앙 대의원이 탈퇴 신청 조합원 중 대전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탈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대전아이 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현재 법인 해산으로 인해 청산 과정에 따라 탈퇴 신청하였음을 송직근 전무이사가 답하다.

의장이 다른 질문 및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신지혜 대의원의 동의, 이자우 대의원의 재청에 따라 2023년 탈퇴조합원 70명의 출자금 38,151,800원 환급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3)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의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이연서 총무회계팀장이 2023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 사항을 자료집 39~42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김준형 대의원이 사업예산 변경에 대해 총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정 금액 이상은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다. 이에 의장이 사업예산 사후 승인에 대해 금액 기준을 정하고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하다. 의장이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김준형 대의원이 동의하고 김찬옥 대의원이 재청하였으며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2023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4) 제4호 의안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2023년 사업보고(안)을 송직근 전무이사가 자료집 45~83쪽을 바탕으로 사업기조와 3대전략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보고하며, 6대 지표로 2023년 기준 조합원 4,583세대, 출자금 1,409,370,000원, 건강리더 339명, 건강반 49개반(382명), 후원자 260명, 자원봉사 219명(515시간) 달성을 보고하다.

2023년 결산보고(안)을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자료집 84~95쪽을 토대로 설명하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도 대비 약 8억정도 증가했고, 흑자 82,948,034을 기록했다고 보고하다.

2022년부터 법인세를 내기 시작했고, 법인세를 낸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다.

신지혜 대의원이 감가상각비가 작년 대비 증가한 것과 협회비가 없는것과 수선비 감소에 대해 질문하다.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주간보호센터 개소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작년 대비 약 2배 정도 늘었고, 협회비는 세무사무소의 의견으로 협회비를 지급수수료 과목에 합산했다. 다음 총회자료집에는 하단에 주석으로 표기 하겠다고 답변하다.

수선비 감소는 2022년도 주간보호센터 개소를 위해 공용공간을 수리해서 비용이 높았다. 2023년에는 기수 선으로 인해 비용 발생이 적었다.

의장이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이 홍은영 대의원의 동의, 신지혜 대의원의 재청, 참석대의원 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5) 제5호 의안 : 2023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자료집 97~99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2023년 당기순이익 82,948,034원이 발생하였고, 발생된 잉여금은 정관에 따라 누적 손실금 272,621,196원을에 보전하여,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189,673,162원이라고 설명하다.

의장이 2023년잉여금 처분(안)이 전종훈 대의원 동의, 이경민 대의원의 재청,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6) 제6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의장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경영지원실 백종범 주임에게 요청하다. 백종범 주임이 자료집 103~112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의 현장 조치사항 및 표준정관 준수 등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며 설명하다.

신현정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본인이 출자금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 조합으로 귀속된다고 백종범 주임이 답변하다. 추가로 신현정 대의원이 환급 청구를 하더라도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 송직근 전무이사가 총회 승인 후 환급이 되고, 전액 환급을 못할 시 유예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다.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해산할 때 출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출자금 비율대로 나눈다고 추가로 답변하다.

전종훈 대의원의 동의, 주웅식 대의원의 재청,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으로 의장이 정관 변경(안)이 원안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7) 제7호 의안 : 임원(이사,감사) 선출의 건

의장이 임원(이사, 감사) 선출을 위하여 조세종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장직을 위임하고, 의사진행을 요청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자료집 113~119쪽을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기까지의 경과보고 및 적법한 절차에따라 공고 및 적법한 절차에따라 공고하고 입후보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에 대하여 선거하여야 할 정수대로 입후보되었음을 설명하고, 임원 후보자들은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요청하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자료로 대체하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수에 맞게 입후보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 임원 정수와 임원 후보자 정수가 같을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의견을 묻다. 참석 대의원들의 의견이 없자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수에 맞게 입후보되었으니 등록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제안하고, 의견을 묻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입후보한 임원후보자 전원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고, 선출된 이사 중 호선으로 이사장이 선출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다. 임시이사회를 진행하여 결과를 선거관리위원장이 받아 총회 속개를 선언하고, 석연희 이사가 이사장으로 호선되어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임원 선출 결과>

구분	인원수	당선인
이사장	1 명	석연희
이사	10 명	국현정, 박종희, 박천경, 봉미경 석연희, 송직근 신현정, 이근화, 전종훈, 정운재, 최채옥
감사	2 명	김정호, 박봉희
Ä		13명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당선된 석연희 이사장에게 의장을 위임하다.

8) 제8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송직근,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에게 요청하다. 송직근 이사가 자료집 123~147쪽을 참고하여 사업방향 및 전략, 조직개편(안), 부서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다.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자료집 148~160쪽을 참고하여 2024년 예산 수립 기조 및 부서별 예산을 설명하다. 다수의 참석 대의원이 동의, 재청하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9)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의안에 대한 설명을 정운재 경영지원실에게 요청하다. 정운재 경영지원실장이 자료집 161~163쪽을 참고하여 현재의 차입금 1,489,004,660원을 포함한 총 차입금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하는 안건을 설명하다. 전종훈 대의원의 동의와 신지혜 대의원의 재청과 참석 대의원의 이의 없음을 확인 후 2024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489,004,660원을 포함한 총 합계금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0) 기타

의장이 특별제안을 요청한 김나희 조합원을 소개하며, 제안 설명을 요청하고, 김나희 조합원이 자료집 167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김나희 조합원이 채식 위주의 식생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냉장고 줄이기, 일회용기 멀리하기에 같이 행동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기후위기 영화 상영 등을 안내하다.

의장이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참석 대의원에게 특별제안에 결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다수의 참석 대의원이 실천에 동의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의장이 폐회선언하기 전 다른 제안이 있는지 참석 대의원에게 묻다. 주웅식 대의원이 사업부분 감사보고서 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소통관계를 구체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면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시설 계획이 있으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서를 제안하다. 의장이 제안에 감사하며 이사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아. 폐회 선언

의장이 이외의 여타 의안이 있는지를 참석 대의원에게 묻고,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폐회할 것을 제안하다. 전종훈 대의원 동의와 다수의 참석 대의원 재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오후 4시 12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5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5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과 서명날인인이 기명날인하다.

차. 참석 대의원 명단(53명)

국현정	김복남	김윤영	김정호	김준형	김찬 옥	김창원	김태순	김혜원
나준식	남은순	박명수	박미앙	박윤민	박주희	박천경	박혜란	배선부
배현옥	백 옥 현	봉미경	서화자	석연희	송직근	신지혜	신철순	신현정
오민우	휴성현	윤미경	이경민	이근화	이미순	이선아	이연서	이옥희
이원표	이자우	임영신	장은영	정용철	전성옥	전종훈	정연희	정운재
정종한	주웅식	천재경	최수이	최윤나	한선영	허애령	홍은영	

이상 53명

2024. 02. 24.

민들	레의료 복 2	지사회적협 동조 합	(인)		박 천 경	(인)
의	장	석 연 희	(인)	서명 날인인	신 현 정	(인)
					일 영 시	(<u>(</u> 9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 고시 제2015-0358호(2015.12.22. 340.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른 의사록 공증 제외대상 법인임.

통합26차 정기총회(제21차 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4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24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기타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2024년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6호, 제53조 제1항

-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진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 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

1. 감사 일시

- 사업부문 : 2024년 8월 14일 (상반기)

2025년 2월 7일 (2024년 상·하반기 종합)

- 회계부문 : 2024년 8월 14일 (상반기)

2025년 2월 14일 (2024년 상·하반기 종합)

2. 감사 범위 : 2024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회계 부문

3. 감사 결과 보고

1) 사업 부문

2024년 사업감사 종합 보고서

○ 감 사 일 : 2025년 2월 7일

○ 장 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

○ 감사기간 : 2024년 1월~12월

○ 감사범위 : 2024년 1월~12월 사업

○ 감 사 자 : 박봉희

○ 참 석 자 : 석연희 이사장, 송직근 본부장/ 경영지원실 이연서

○ 감사근거 : 정관 제 53조에 의함

사업부문

유엔은 2025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보편적 의료 보장,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체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떤가? 2024년 비민주적 정권과 공권력에 의해 전 국민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정치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할 때입니다. 오래전 주민참여 일차보건의료 지역공동체 모델을 만들어온 의료협동조합이 지난 해 11월, 의료협동운동 30주년 기념 행사와 심포지움을 개최하며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대안적 의료공급체임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 일상을지켜낸다는 것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깨달으며 그동안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실천해온 의료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민들레의료사협은 2024년 '민들레 존재(민들레가 있다)를 통해 조합원과 연결하고(조합원을 잇다)이를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로움을 잊다)을 목표로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조를 출발했습니다.

새로 조직 개편된 '조합원건강이음센터'가 민들레 건강학교, 치매학교 및 D카페 운영, 퇴원환자 돌봄, 신입조합원의 날 등 조합원과 연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와 신임 이사를 포함한 임원학교를 진행하며 민들레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입조합의 날] 정례화, [임원학교]가 임원 스스로 기획하며 서로 연결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지속되기를 권고합니다. 의료 사업소 역시 매출과 손익이 모두 개선되어 전년에 이어약3억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안정화와 한의원의 팀웍 등 각 기관별 약진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업소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경영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합원 주체와 61명 직원들의 '쉼과 성장'을 위한 계획이 절실하며, 민들레의 가치를 드러내는 10원칙 성과 지표 점검, 공동체 가치 실현과 연대활동 등 균형적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민들레 10원칙에 더해 건강자치력, 지구건강 지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실천이 중요합니다. 선언적 지표개발보다는 조합원실천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엔 지표개발 로드맵을 구상하되, [지구건강 실천을 위한 조합원 작은 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공동의 행동이 일어나도록 이사회에서 책임 이사(T.F)를 선임하여진행과정을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2. 민들레의료사협 직원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외부 피드백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재무성과에 지친 직원들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주요한 돌봄 주체로 직원들의 소진과 스트레스, 자기 돌봄 분야의 교육과 예방이 시급해보입니다. 민들레에서 2019년 팀장, 중견, 신입 직원교육(위탁사업)이나 직원이 제안하는 '쉼, 자기성장 교육'의 세부 예산편성과 기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조합원, 직원 교육 전반 기획을 위해 교육위원회신설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건강이음센터는 2025년 통합돌봄사업본부로 통합되기에 새로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건강조직화 교육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부서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조직운영을 돕는 감사실이 신설되어 조합 운영, 관리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으니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 3.'주치의가 있는 민들레 주간보호센터'는 다른 유관기관과의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들레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이용인원과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으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춤춤한 돌봄의 연대가 일어나도록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4. 2024년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시범사업은 전국 83개 의료기관 가운데 20개 의료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도한 민들레의료사협'한의다학제협업사업'이 의료사협연합회 2025년 총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고, 민들레의료사협 지역사회의료센터를 비롯한 적극적 활동 역시 성공적인 전국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서로건강돌봄 봉사단'이 구성되어 지역사회 자발적 돌봄을 위한 자원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동시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범 사업 연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부 주도 통합돌봄 제도의 빈 틈을 촘촘히 채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조합원 이용률 재검토와 방문의료확대, 환자중심 일차의료 등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 환경의 대처는 의료사협연합회와 함께 연구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사장님 이하 조합원을 잇기 위한 이사회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 02. 18

사업 감 사

반보형

2) 회계 부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장 귀하

2025년 02월 14일

본 감사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4년 12월 31일자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 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감사결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2024년 경영성과는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5,208,903,402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의견으로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 1. 상당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 출자금 반환 등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퇴직연금 미지급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지급을 권고하였고
- 2. 감가상각자산중 소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수고하시는 조합원 및 경영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김 정 호 연)

제2호 의안 2024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4년도 탈퇴 조합원 86명의 출자금 27,322,000원 환급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16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9호, 제35조 제4호

-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 2024년도 탈퇴 신청 조합원 현황

(단위 : 원)

7-LOI PH	517577	7-101 7	517577	7-LOI 12	\$175717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조합원 명	환급출자금
최 ■ 숙	50,000	김■복	100,000	이■준	1,670,000
옥 ■	50,000	김■미	50,000	채■욱	50,000
임■희	50,000	이■철	2,720,000	전■순	50,000
이■숙	50,000	정■남	50,000	임■수	50,000
김■례	100,000	서■자	54,000	조■순	50,000
김■영	157,000	김■순	60,000	조■현	50,000
김 ■ 운	123,000	장■정	50,000	김■선	50,000
전 ■ 자	150,000	문■섭	50,000	김■성	50,000
황■순	150,000	윤■라	75,000	이■우	50,000
송■경	50,000	김■헤	50,000	김■환	525,000
송■희	70,000	정■워	50,000	한■희	153,000
백 ■ 화	150,000	김■순	1,050,000	장■숙	1,590,000
하■우	1,200,000	박■홍	50,000	길■영	50,000
양■숙	50,000	김■진	196,000	허■영	150,000
한■■■■ ■■■■■■■■합	10,000,000	엄■자	50,000	하■일	100,000
박■경	100,000	이■봉	50,000	김■덕	50,000
고 ■ 정	50,000	김■순	50,000	이■훈	50,000
문■령	50,000	문■심	50,000	안■자	1,010,000
이■일	50,000	김■한	50,000	노■화	82,500
<u>손</u> ■희	100,000	김■진	100,000	조■희	80,000
 김 ■ 훈	70,000	손■정	580,000	김■정	50,000
박■연	50,000	엄■화	57,500	김■수	50,000
 안 ■ 주	50,000	표■근	50,000	이■순	105,000
 김 ■ 환	50,000	김■미	443,000	서∎아	55,500
윤 ■ 금	50,000	이■자	101,000	이■선	73,000
 김 ■옥	78,000	김■수	50,000	이■경	50,000
 윤 ■ 수	100,000	이■정	50,000		.
 박 ■ 정	50,000	변■미	64,000		
 김 ■ 자	50,000	송■분	150,000		
 강 ■ 자	50,000	이■흐	1,652,000		
	총 86명				27,322,000
-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2024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한 변경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63조 제3항

-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024년 사업예산 전용/변경 이사회 승인 내역

1) 요약

- o 2024년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자산)예산을 적시된 사유로 일부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 o 이사회 승인 후 정관 제63조 제3항에 따라 자산 취득 변경 건을 총회에 사후 승인 요청함.

2) 총회 승인 예산 변경 현황

(단위: 원)

구분	최초 승인 예산	원안 집행	미수립 예산 집행(전용)	미집행	계
건수	2	_	1	2	3
금액	3,000,000	-	34,000,000	_	37,000,000

3)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원)

구 분	기 관	품 명	´24 수립 예산	취득일	집행 결과	이사회 승 인일	사 유
의	검진	내시경 검사기기		′24.06.04	34,000,000	24.06.19	교체
료 기 기	치과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1,000,000				미집행
	의료기기 소계		1,000,000		34,000,000		
소 프 트 웨	경영 지원실	POS 유지보수	2,000,000				미집행
어	소	프트웨어 소계	2,000,000				
		총 계	3,000,000		34,000,000		

제4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5호

-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 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1. 사업 보고 총평

■ 2024년 사업기조 :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2024년 민들레는 민들레를 중심(민들레가 있다)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단절되었던 서로를 연결(조합원을 잇다)하고, 그 결과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외로움을 잊다)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활동이 민들레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부서별로 일상 점검하기 위한 **감사실**(실장 : 정운재 부이사장 겸직)을 신설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업무매뉴얼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2025년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사업본부, 돌봄사업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돌봄 현장의 경험을 통해 돌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느슨해진 다양한 연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연결은 돌봄의 핵심가치인 지역 사회에서 나이들기(Aiging in place)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건강한 연결, 건강한 관계의 확장이 민들레가 지 향하는 건강한 생활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조합활동(조합사업부)과 보건예방활동(주민참여건강증진 센터)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합원건강이음센터를 신설했습니다.

■ 민들레가 있다

'좋은 의료, 좋은 돌봄'설문을 통해 민들레의 존재가치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좋은 의료' 항목에서 신뢰 기반 의료 서비스(환자중심, 적정진료), 전문성과 소통강화(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의료진,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접근성 강화(모든 연령, 계층이 이용하는 열린 의료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료(민성질환 예방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최소한의 약물치료(과잉처방 지양)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좋은 돌봄' 항목은 안전한 돌봄(제공자 소진방지 및 체계적 지원), 대상자 중심 돌봄(주체적 돌봄 문화 조성),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체계 구축), 삶의 질 향상(생명 연장을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 Three Well(Birth, Being, Dying) 철학 적용(전 생애적 돌봄 서비스 확립)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민들레에 바라는 점'항목에서는 조합원 중심 운영(조합원 의견반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 의료기기 현대화(최신 의료 장비 도입으로 진료 품질 향상), 시설 개선(대기 공간 확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홍보(조합을 알리고 신규 조합원 유입을 위한 홍보강화), 사회적 실천활동(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돌봄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 조합원을 잇다

민들레-조합원-지역사회의 연결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관계망 확장을 모색하고, 조합원 건강돌봄환경조사¹⁾ (14개 항목)를 통해 '연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입조합원 만남의 날, 건강반 선정위원회, 자원활동, 건강강좌 강사, 걷기행사 기획·운영 등을 통해 민들레와 조합원의 접점을 확대하고, 조합활동에 조합원 참여를 활성화했습니다.

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로돌봄 건강리더 과정은 '대덕구 마을건강 네트워크²⁾'를 통해 민들레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장애인의 건강관계망을 확장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어르신 체험프로그램), 대전대학고 스포츠건강재활학과(건강반 건강측정), 대전 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등 지역대학과의 연결도 활발했습니다.

2025년에는 ㈜공생과 협력을 통해 방문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거동불편 장애인, 어르신의 환경개선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외로움을 잊다

'민들레가 있다', '조합원을 잇다'의 결과가 '외로움을 잊다'입니다. 민들레와 대덕구 건강마을 네트워크가함께 기획·운영한 서로돌봄 건강리더 교육과정과 후속모임으로 결성한 '서로건강돌봄 봉사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로건강돌봄 봉사단은 다학제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로돌봄 건강리더 과정을 마친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단으로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봉사하며 소통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플로킹 활동 등 주민들이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일차의료센터 > 의원

응급상황 시 신속대처를 위한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기환자의 순서 안내를 위해 대기실 모니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만성 질환관리 교육을 통해 원장-직원과 교류가 늘었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용자에게 통 일적인 안내가 가능했습니다.

■ 일차의료센터 >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질 향상을 목표로 대장내시경 검사 후 모니터링 전화 시 재차 안내 진행 및 1차검진 10일 내 결과 통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합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촉진안내 강화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¹⁾ 조합원 561명 응답, 결과보고 홈페이지 참조(홈페이지>조합활동>소식지>[2024 건강돌봄환경조사] 결과보고)

²⁾ 대덕구 마을건강 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덕구청, 대덕구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대덕구 보건소,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대덕 구 중독통합지원센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중리종합사회복지관

■ 일차의료센터 > 한의원

진료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장비 및 침상 점검 후 진료) 및 진료과정에서의 안내(뜸치료시 화상주의, 사혈부항 처치 후 주의사항 안내, 첩약환자의 경우 한의원장이 직접 복약안내전화를 시행)를 강화해 이용자의 신뢰 및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 일차의료센터 > 치과의원

예방관리(스케일링과 잇몸치료 등 월평균 108건, 건강반 대상 양치질 교육 및 상담), 방문구강건강활동(주 간보호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잇솔질 교육 및 상담 월 1회) 및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구강건강활동을 펼쳤습니다.

■ 지역사회의료센터

방문의료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운영회의, 사례회의, 학습 등을 진행했고, 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를 통한 지원모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학생 실습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료, 지역사회재활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통합돌봄사업본부 > 주간보호센터

주치의 건강상담(월2회, 연120명), 기능에 따른 분반활동 시범운영(총 8회),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7종, 연230회), 공백없는 케어(필수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1~2명 추가배치) 등 민들레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복지 통합돌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통합돌봄사업본부 > 조합원건강이음센터

지역 약8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바지³⁾건강반(前 만성질환건강반)을 구성해 체력측정, 건강체조, 걷기대회, 체험활동, 건강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을 대덕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치매를 예방하는 '기억학교', 퇴원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에자이와 협력한 'D-cafe'는 치매당사자 및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휴머니튜드를 주제로 자조모임을 운영해 치매당사자와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경영지원실

지역사회 보건예방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 조합원 및 지역사회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는 기부금을 활용한 보건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방문의료, 의료사업소, 돌봄사업소 연계 등)하였고, 2025년 다양한 보건예방활동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³⁾ 청바지 : 청춘은 바로 지금을 줄인 말.

1. 설립이념 따른 2024년도 사업 실적

설립이념

- 1.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 3.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 4.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①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o 조합의 존립과 지속 발전
 - 조합원 수 : 4,714세대
 - 출자 금액: 1,252,060,000원
 - o 협동조합으로 운영
 - 총회(대의원) : 정기총회 연1회 개최
 - 이사회: 매월 개최(정기이사회 10회 개최), 이사학교(워크숍 1회)
 - o 건강 자치력 향상 및 동네돌봄 활동
 - 건강반 활동
 - 다학제 장애인건강주치의
 - 서로돌봄 건강리더 양성(15명) : 서로건강돌봄봉사단 월 2회 봉사활동
 - o 스스로조합비(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분배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건강반 활동비 지원 등
 - o 연대활동 참여
 - 출자 단체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등 5개, 26,000,000원
 - 외부 출자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65,683,304원
 - 정기회비납부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 지역화폐협동조합, ㈜케이히어링, ㈜에자이, ㈜공생,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SVMIK)
 -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 대덕구/유성구 지역사회재활 위원회
 - 대덕구건강마을네트워크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덕구청, 대덕구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덕구 보건소,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구정 신건강복지센터, 대덕구 중독통합지원센터, 대덕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 ②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 나간다.
 - o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는 의료기관 운영
 - 의원 : 방문의료,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 한의원 : 적정진료, 한의재택의료,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등
 - 치과의원 : 자연치아, 예방치료, 방문구강관리, 장애인치과주치의 등
 - 검진센터 : 주치의제 지향(이용자 검진기록관리, 결과추적관리 등)
 - o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 조합원,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해 주치의 진료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재활 서비스 제공
 - o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의료비와 상담료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
 - o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개선
 - 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방문진료시범사업(의사, 한의사) 가정간호사업, 방문작업치료, 방문구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관련 상담 및 서비스연계
 - o 동네돌봄 사업 전개
 - 퇴원환자 통합돌봄사업(재가서비스, 방문의료, 영양,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 경증치매어르신 헬스케어서비스 사업(ICT활용 건강관리, 일상생활교육, 영양지원 등)
 - D-cafe(치매카페) : 치매이해학교
 - o 조합원 및 지역사회 건강 및 돌봄 상담 : 조합원건강이음센터 개소
- ③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 o 건강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지원 및 건강리더 교육
 - 건강화폐 운영 : 조각통장 발행 및 조각 지급
 - o 맞춤형 건강교육
 -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교육 진행(장애인체육회와 협력)
 - 주간보호센터 맞춤형 재활
 - o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언어, 시각, 지적, 발달장애인의 건강검진 및 치과 진료 실시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지원(신체적 보조 또는 타 기관 정보 제공)
 - o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금연상담(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협력),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장애인건강반
 - o 취약계층 건강반 운영
 -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력증진 건강반 운영, 조각지급 및 건강수첩 작성
- ④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o 건강반을 통한 건강한 생활공동체 확산 : 건강반 간 연계, 조합행사 기획·운영
 - o 서로돌봄건강리더 양성(장애인, 비장애인): 서로건강돌봄 봉사단 발족, 월 2회 활동

2. 정관에 따른 2024년도 사업 실적

1) 2024년도 전체 사업량 대비 주사업 비율 실적

<정관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그님			사업비(단	난위: 원)
	구분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계(A)		4,526,753,031	4,350,411,836
		의원∙검진	1,789,597,567	1,940,158,191
		한의원	302,073,318	313,315,152
	지역주민사회서비스	치과	899,290,286	419,218,347
ス	제공사업	지역사회의료센터	846,605,262	945,213,730
주 사 업		주간보호센터	623,425,598	671,346,353
н		계	4,460,992,031	4,289,251,77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조합원건강 이음센터	50,000,000	49,865,500
		계	50,000,000	49,865,500
	소계(B)		4,510,992,031	4,339,117,273
	조합원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교육훈련비	4,411,000	3,012,000
기 타 사 업	협동조합간 협 동을 위한 사업	연대활동비	4,350,000	1,577,740
	조합 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홍보활동비	7,000,000	6,704,823
	소계		15,761,000	11,294,563
	주사업 비율 (C=B/	'A)	100%	100%

2) 2024년도 주사업 실적

①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실적

<u></u>	
가. 의료시설 운영	o 주치의 기반 의원, 건강검진센터, 치과의원, 한의원 운영 o"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 등록어르신 총 57명으로, 평균 43명 어르신 이용 - 종사자는 총 15명으로 주치의가 있는 주간보호, 맞춤형, 적정, 선택형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o 건강자치력 향상 활동 - 건강반 활동: 38개반 280명 참여 - 건강리더: 장애인건강플랫폼 서로돌봄 건강리더 - 건강강좌: D-cafe - 건강화폐 운영: '조각'통장 발행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o 대덕구청 위탁사업 - 통합돌봄사업 (경증치매어르신, 퇴원환자 통합돌봄) o 재가의료팀(지역사회의료센터) 운영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방문진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작업치료 - 다학제 장애건강주치의 서비스 - 장애인 건강반 운영 - 돌봄친화기술 : 돌봄 당사자 중심의 적정 기술 실험 o 취약계층 등 의료비 지원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o 지역사회연계 보건예방활동 - 행복상담소 건강상담 - 서로돌봄 건강리더 o 어르신 건강반 운영 o 치매이해학교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활동 ○ 사회적의료기관협의회 활동 참여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보건의료인 위원회 활동 ○ 방문의료연구회 활동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현장실 ○ 한국에이자이 HHC 사회혁신리빙랩 참여 : 돌봄친화기술 ○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사회재활 위원회활동 ○ 대덕구 방문진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후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방문의료관련 연구사업 참여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현장실습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 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시설	o 조합원 및 단체의 활동 공간 제공 - 우리건물 3층 활동실 : 장애인 운동 등 - 럭키스포츠 5층 청바지공작소 : 조합원 활동공간

3) 2024년도 기타사업 실적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0 조합원 교육
- 건강교육 : 만성질환건강반 건강학교, 치매이해학교
- 신입조합원 교육, 서로돌봄건강리더(7월)
- o 직원 교육
- 보수교육 : 직역별 보수교육
- 법정교육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 외부교육: HIA(돌봄친화기술),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지역사회말기돌봄 교육 등
- o 기타 역량강화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역량강화 교육 : 경영공시 등
- 의료사협 세무실무, 의료사협특성과 조합원 조직화 기초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지 이론 및 실습 등
- AI skill-up class : 공익활동 실무에 배우고 써먹는 chat GPT

2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o 우리조합에 출자한 법인(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소 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총 출자금 26,000,000원
- o 우리조합이 외부 법인(협동조합)에 출자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등 11개, 65,683,304원
- o 회비납부 단체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등
- o 활동 참여 단체
- 지역화폐협동조합, ㈜케이히어링, ㈜에자이, ㈜공생
-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 대덕구/유성구 지역사회재활 위원회
- 대덕구건강마을네트워크 :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덕구청, 대덕구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대덕구보건소,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덕구중독통합 지원센터, 대덕구 중리종합사회복지관

③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o 조합 홍보
- 홍보물품 제작(마스크, 머그컵, 밴드), 조합소개 브로슈어 제작, 조합가입 안내판 설치
- o 홍보 채널 관리
- 카카오톡 소식지채널 가입자 목표 50명
- 가입자: 2023년 기준 545명 -> 2024년 말 기준 665명 / 120명 증가, 240% 달성
- o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의료비지원 대상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이민자 등
- 2024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예산 29,500,000원
- 총 165건, 3,514,430원 지원

4 임대사업

o 옥상 중계기 임대 : ㈜케이티 2,200,000원 (2024년)

3. 202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

1) 〈일차의료센터〉 사업평가

(1) 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기기 관련	-응급상황시 신속대처를 위한 장비관리	-의료장비 (산소통,산소포화도 등)중 a/s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확인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히 사용할수 있도록 미리 관리하고 정비하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 들고 교육하여 응급시 신속히 조치할수 있도록 하기	-의료장비는 담당자를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주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업체와 통화 후 관리 중에 있음-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산소통,산소포화도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할계획임
의료 서 비 스 사 접 목 표	진료 환자 관리	-진료대기시간의 효율적 인 관리	-대기환자의 컴플레인 감소를 위해 검사하시는 분들은 검사중 명찰이나 스티커 부착으로 순번 확인할수 있도록 표시를 만들기 -만성질환 교육 동영상 업로드 필요(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손체조, 운동, 건강 관련 동영상 등)	-24.9월경 대기실 모니터 설치함. 환자들이 본인의 순서를 알 수 있어 좋다는 반응과 진료실이 변경되는 관계로 순서가 안맞다고 컴플레인 하는 경우 발행. (빨리보겠다고 하신분들이 변경 된다고 말씀드리고 접수시간 확인하시라고 안내중) -만성질환 교육 모니터에 대기 순번 화면이 나오는 관계로 동영상은 중단 중
ш	수익 창출 관리	- 매출목표 3%상승	-일차만성질환 참여자의 신규,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	-10월부터 정식사업으로 되며 환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관계로 참여 종료함
	조합원 관리	-조합원 가입(30명) -스스로 조합원(5명)	-조합 관련 자료 비치하여 조합 홍보 -접수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조합 안내. 설명	-조합원:25명 가입 -스스로 조합원:3명 가입 -좀더 노력이 필요함

(2) 검진센터

	군신센터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이 료	의료 기기 관련	- 의료장비 관리 시스 템	-의료장비 노후화로 정기적인 점검시스템 진행 -내시경 스콥사용시 렌즈와 방수관리 잘하 고 검사시 환자케어 잘하기 (매일장비점검 하고 기록하고 유지관리하기)	-내시경 장비 및 방사선 장비 매일 장비점검 및 장비관리 시행 -검사시행전 장비점검으로 갑 자기 발생하는 장비고장문제 감소
	진료 환자 관리	-검진 질 향상	-채혈 후 지혈안내를 적극적인 액션 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65세이상 급여검진대상자시 흉부사진을 판독 의뢰하기 -진료수면환자시 흉부사진 확인하기 -홀수년 대변검사 상담자는 상담안내문 주고 상담도 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기 -대장내시경주의사항에 검사항목 만들어서 검사내용 체크해서 드리기 -1차검진 한 분들은 10일안에 결과 통보 하기 -구강검진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 하고 안내하기	-채혈안내 모든환자에게 시행했고, 그과정에서 컴플레인하는 분들도 계셨음, 항혈전제등 복용하시는 분은 지혈밴드 사용하는 방안 고려 -65세이상급여, 수면환자 모두흉부사진 촬영으로 유질환자확인 가능 -대장내시경시행환자 모두에게 주의사항 전달했고, 혹원장님과 상담내용 기억안나는분들은 모니터링전화시 안내,주의사항 전달문에 다시 문구 넣어서 전달필요 -1차검진 10일안에 결과 통보는인력, 구조등의 문제로 시행미비(변화되는 구조로 집중해보고, 차선책 마련 필요)
	수익 창출 관리	- 매출 3% 목표	-검진 후 추적 검사 대상자한테 문자,전화 작업(초음파, 위, 대장, 간질환, 심비대 등) -대장내시경 매일 3건 예약해서 검사 유지하기 -상반기 전화 작업으로 검진하는 분,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혈관노화도 검사 서비스 진행하기 -전 직원 검진홍보로 검진받는 경우 소개 직원에게 부가검사 진행하기 -대덕구 인근 신규 아파트에 검진 홍보하기 -연말검진 직원 지원받기(전화예약과 문진표 작성,결과정리등)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약 10%상승 달성(전체적인 검진 건수는 감소, 수가 증가 가 원인) -비수기 지속적인 전화작업과 꾸준한 f/u 관리 필요성 증가 -연말 직원 지원은 받지 않은 채로 진행.
	조합원 관리	-조합원 건강예방치원으로 검진 챙기기 - 조합원 친밀감 갖기	-내원조합원인 경우 각 검사 파트에서 조합원에게 방문 감사 인사하기 -신규 조합원 관리로 수건선물하기 -조합원 가입 60명 / 스스로조합비조합원 가입 5명 -조합원들만 부가서비스진행과 중요행사 진행	-조합원가입 85명 스조가입4 명으로 스조가입 1명부족하 지만 조합가입은 100%이상 달성함 -조합원가입설명 과정에서 민 들레 의미에 대해 알리는 계 기가 됨 -조합원건강관리를 위한 지속 적인 이벤트 및 안내 필요

(3) 한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진료 관리	-환자의 주소증 해소 -적정진료	-뜸 치료 시 화상 유의 및 처치 후 관리 안내 -사혈부항 처치 후 주의사항 안내 -첩약 환자 관리; 첩약 배송 후 확인 및 복 약 안내 전화 -매일 진료시작 전 물리치료 장비 점검과 침상 매트 및 핫팩 온도 체크 후 진료	-내원자에게 수시로 주의사항 전달 -원장님이 직접 환자와의 소통 으로 적정 -진료 시작 전 점검으로 환자 분들의 만족도 상승
	의료 서비스	-환자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내원자에게 친절하게 응대 -초진, 주말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녹용 첩약 환자에게 한방파스 1세트 지급 -진료대기 시간 활용(발마사지, 동영상시청, 한의원 및 조합 홍보물) -7번 침상 벽 도배완료 및 ICT 교체 신청	-내원자에게 자세한 설명으로 -내부 인테리어 보완 완료
의 료 서 비 스 사 업 목 표	89 리 안 관	-근무자들의 화합 -내원자의 안전과 편안함 -경제적, 효율적 운영	- 연 2회 직원 회식 - 월 1회 의약품, 의료소모품 재고파악과 정리 - 의약품, 의료소모품, 기타 비품의 적정 구매와 사용 - 원내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 - 퇴근 시 전기 및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 생활화 - 공진단 할인 행사 공고 및 홍보(설날, 어 버이날, 추석, 한여름, 수능 기간에 조합 홈페이지와 조합원 문자발송 외) - 카드뉴스 조합원에게 한의 치료 홍보 및 교육 - 2,800만원/월	-재고현황을 정기적으로 하여 적정재고 보유 -경영지원실과 협조하여 행사 홍보로 내원자 및 매출 상승
	조합원 관리	-기존 조합원의 소속감과 조합에 대한 신뢰도 향상 -신규 조합원 확보	 내원 환자 접수시 조합원 여부 확인 및 조합 정보 제공과 홍보 비급여 진료 상담 시 조합원 혜택 홍보 및 가입 권유 (조합원 가입 12명, 스스로조합원 가입 2명) 기존 조합원에게 스스로조합원 혜택 정보 안내 	-조합원 : 7명 스스로조합원 : 0명 -스스로조합원(기부금) 혜택 안내로 가입 권유

(4) 치과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평가
	의료 기기 관련	-노후 의료 장비 교체 -진료 환경 개선	-상담실 모니터 교체 -자외선 소독기 교체 -환경 개선: 냉난방기 청소, 공기청정기, 청 소기 구입	-치과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교체하였음 -냉난방기 업체 청소하여 쾌적함 -자외선 소독기와 공기청정기, 청소기등은 차 후 논의예정
의료 서비스 사	진료 환자 관리	-정기적 치주관리를 통한 잇몸질환 예방 -스켈링 & RP: 100건/ 월 -임플란트환자 관리	-진료환자 정기 검진과 리콜 문자 발송하기 -임플란트 환자 정기적 관리를 위한 문자 발송하기 -스켈링 후 차트에 담당자 기록과 환자 상태 기록하여 내부 공유	-문자 발송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스켈링과 잇몸치료등 -월평균108건으로 내원환자들의 치주 관리를 위한 노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시 업 목 표	수익 창출 관리	-월수입 목표 전년대비 5% 상승 -구강검진 챙기기 연 500 건	-진료 시 구강검진 안내하기 -구강검진 환자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기 -비수기(봄, 가을)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연 1회 보험 치석 제거 알림 문자 발송하기 -스켈링시 착색제거는 추가비용받기(2만원)	-진료시 구강검진 안내와 치료설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침체로 인하여 매출상승은 어려움 -전년대비 매출90% -구강검진 65%정도 수준임
	조합원 관리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 -조합원가입 10명 -스스로조합가입 2명 -수요일 활동	-접수, 수납 시 조합원 가입여부 확인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하기 -주간보호센터 방문 -지센과 협업하여 방문활동 -잇솔질 교육 (건강반, 조합원 어린이집등) 치과방문 예약신청 팀별, 개인별 가능	-주간보호센터,지센에서 요청한 환자 한달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잇솔질교육과 상담을 하였음 만족도 좋음 -건강반활동자 예약받아서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양치질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졌음 -조합원 가입과 설명은 희망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내원자 모두에게 안내는 어려움

2) <지역사회의료센터> 사업평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4년 방문의료 (방문진료/가정간호/재택의료센터시 범사업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4.01.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건강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시스템 만들기

o 주요사업내용

- 대 상: 재가 및 시설의 거동 불편자 (장애인, 어르신, 수술 후 퇴원환자, 기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병원 내원 이 힘든 환자), 지역사회 의뢰 대상
- 내 용: 의료접근이 불편한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서 의뢰받은 대상에게 다학제 팀기반 의료 서비스 제공
- 매출목표: 7억 (23년 매출 6.6억)

o 추진목표

구분	목표	2024년 목표	상반기 건수	연긴	선수
방문진료 (*동반수가포함)	왕진, 가정간호 및 작업치료 서비스를	900건*1	693건	1,43	39건
가정간호(가정)		5,200건 (시설2,000건)	2,178건	5,301건	4,205건
가정간호(시설)			712건	J,3012	1,096건
방문작업치료	팀 접근 방식으로	50건	40건	51	건
 재택의료센터	진행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인다.	100명*1	123명	15:	 3명
(재택) 방문간호			1,264건	2,65	55건
(개택) 사회복지			61건	139	9건

o 추진전략

- 1)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홍보 및 활성화
- 2) NECA 환자 중심 방문의료 연구 사업 참여
- 3) 호스피스 및 가정임종을 위한 팀원 교육 (사전연명의료제도 등)
- 4) 당사자 중심의 복약관리 (약달력, 약포지 등을 활용하여 복약순응도 향상)
- 5) 발관리 등 민들레 특화 방문의료서비스 지속
- 6) 마이차트 자체시범사업 시행 (환자, 보호자, 돌봄제공자 및 의료진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차트)

사 업 평 가

목표: 의료서비스사업목표 > 운영관리>방문의료서비스 체계화

o 산출평가 : 25건(운영회의, 사례회의, 학습)

o 성과평가: 재택의료센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방문 시 필수관리항목을 점검하여, 보편적인 방문 프레세스를 마련. 접수메뉴얼 마련, 방문의료신청자 대장을 작성하여 누락을 방지함. 예방접종시 응 급키트를 준비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함. 노트북 사용으로 방문 시 약물조회, 처방이 용이해짐. 대상자 컨디션에 따른 방문서비스 연계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정기적인 학습으로 방문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에 대해 역량 강화계기가 됨.

o 과정평가: 방문요청의 급증으로 의료인의 신체적 정서적 부담이 커져 소진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함. 시간적 여유가 없어 챠트기록에 미흡함이 있었음. 향후 고령화 증가로 중증환자는 더 많아질 전망이며, 방문의료서비스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충원이 필요함.

o 총괄평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체계적인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목표: 의료서비스사업목표>운영관리>매출상승

o 산출평가 : 2024년 방문건수참고

o 성과평가: 956,157,843원(2023년 대비 1.5배증가/2023년 6.6억)

o 과정평가: 대덕구의료비지원, 재가의료센터의 연계, 지역사회 방문의료 인지도 상승으로 대상자 증가. 의사 방문 진료시간증가, 간호사1인 추가 구인으로 서비스 시간 증가함. 방문의료 필요에 따라 즉각적 대응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함.

o 총괄평가 : 방문의료 요청이 증가하였고, 요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업무환경 개선, 복리후 생 등 처우개선이 필요함.

목표 : 의료서비스사업목표>운영관리>팀접근방식

o 산출평가 : 사례회의 25건, 방문작업치료: 51건, 사회복지사방문:139건

o 성과평가 :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기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과 지 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건강리더 양성, 민관통합사례관리, 지역케어회의 등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복지사업을 진행

o 총괄평가: 다학제 접근으로 통합적인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함. 체계적인 기록방식, 직역 간의 소통방법이 필 요함

활동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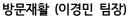




이동 초음파(나준식 원장)

복약지도(박지영 원장)







사례관리(김명숙 사회복지사)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4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지역사회재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2024.01. ~ 2024.12.	

사업개요

o 목적

- 장애인의 질병예방 및 치료, 활동과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o 주요사업내용

- 대 상: 중증 장애인
- 내 용: 주치의 팀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인 건 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 및 내원, 검진, 전화나 SNS 상담, 건강반 활동,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중증 장 애인의 건강관리)
- 목표매출: 2.5억(23년 2.3억)

o 추진추진목표

구분	목표	2024년 목표	2024년 상반기	연건수	
방문진료		800건	492건	1,018건	
방문간호		1,500건	898건	1,849건	
 방문작업치료	7 7 7 0 0 0 0	300건	177건	299건	
			56건	170건	
~~~~~~~~~~~~~~~~~~~~~~~~~~~~~~~~~~~~~	중증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주 1회 이상		42건	
~~~~~~~~~~~~~~~~~~~~~~~~~~~~~~~~~~~~~	향상	2회	1회 실시	1회	
~~~~~~~~~~~~~~~~~~~~~~~~~~~~~~~~~~~~~		-	1회 실시	3호 +@	
장애인치과주치의 /구강관리				34명/21명	
서로돌봄 건강리더교육		_		10회	

#### o 추진전략

2024년부터는 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팀"서비스를 3년간 개발할 예정이므로, 기존의 전략이외에 장애인들의 미충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임. 특히 함께 하는 안산 의료사협, 지역내 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서비스 개발을 할 예정임.

장애인들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분류하여 관리

- 1) 장애인 건강검진,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지속 독려 및 연계
- 3) 만성질환 교육 등록 및 시행 (정신장애인 중 비만관리 그룹)
- 5)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시행
- 7) 장애인에게 듣는 조합원 및 직원 교육 기회

- 2) 예방접종 지원
- 4) 복약 관리 (약달력 활용)
- 6) 평생교육, 스포츠, 취업 연계
- 8) 우울증 관리 필요 (PHQ-9 시행 고려)

#### 사업평가

목표: 의료서비스사업목표 > 운영관리> 장애인건강 유지 및 향상

o 산출평가 : 2024년 방문건수

o 성과평가: 355,536,000원(2023년2,3억)

o 과정평가 : 일반,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진행하였음. 사회복지사 방문을 정기적으로 진행 ·

다학제장애인건강관리 사업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함. 의사1인 추가 구인으로 주치의별 대상자를 적절히 유지하려고함. 거리특성상 유성방문의료는 대덕구방문의료에 비해 체계화, 연계, 다학제적 접근이

소홀하였음.

o 총괄평가 : 통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려했으나, 재택의료서비스 진행에 집중되어 소홀했던 부분이 있음.

서비스 이용 필요도에 따른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이 필요함

목표 : 의료서비스사업목표>운영관리>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를 통해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지원모델

구성

o 산출평가 : 관리인원 21명

o 성과평가: 19,950,000원, 만족도 점수6.1(7점 만점) o 과정평가: 다학제 장주사라는 3년 신규사업을 진행함.

1차년이라서 주체 측도 준비가 안되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서 힘들었음. 2차년부터는 안산, 진천군, 연세송내과 등과 연계협력 하면서 실현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임. 작업치료사 한 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 등 다

학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됨.

o 총괄평가: 다학제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주관)으로 21명의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의료·복지·돌봄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진행하였음

#### 활 동 모 습







방문진료(김화준 원장)



장애인 서로돌봄 건강리더 교육 / 서로건강돌봄 봉사단 발족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0주년 행사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4년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자체	2024.01. ~ 2024.12.		
U O = U O				

#### 사 업 개 요

# o 목적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연대하고자 함

#### o 주요사업내용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연대활동,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지도, 공동체학습, 시민참여 등을 기획 진행.

# o 추진전략

- 1)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공유
- 사전연명의료제도, 발달장애 커뮤니티케어, 치매서포터즈,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건립과 관련한 학습
- 2) 학습하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활동
- 지센 내부에서 매월 학습하고 나누기
- 작업치료 전공학생, 노인전문간호사 실습지도
- 외부 강의, 발표, 방문의료 저서 공동 집필
-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여 해결
- 행복상담소,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보조기기 열린 플랫폼 참여
-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 사업평가

아래와 같이 지센, 민들레 내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면서 학습하고 사회적 기여를 해 오고 있음.

-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를 중심으로 장애인건강플랫폼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케어코디네이터 교육에 3명 참여(신현정, 송직근, 이경민), 케어코디네이터실습 기관으로 참여하여 14명 실습지도함.
- · 한국에이자이가 주최한 사회혁신리빙랩 교육에 민들레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중도퇴사), 그리고 지역주 민, 작업치료실습생 등이 함께 실내외 거동불편 장애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안인사"라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좋은 사례를 남김.
- · 장애인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장애인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기여함(34명 신규등록).
- · 생애말기돌봄교육에 참여 (신현정, 송직근, 이경민, 이옥희 등.)
- · 로터리클럽과 협약으로 방문의료기기를 지원받음.
- · 행복상담소에 참여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였고, 올해는 "서로돌봄 건강리더교육"을 대덕구 유관기 관과 협력하여 계획하고 진행했음(네트워크 활동 20건).
- · 제주MBC취재/방문의료(7월)
- · 한국장애인보건의료학술대회 사례발표 (나준식/이경민. 6월 말)
- · 경남 커넥티드 헬스케어 중심의 주민복지 실현과 리빙랩 발표 (황정인/6월 말)
- · 대전보건대 작업치료학과 실습생 3명, 상반기 일경험 학생 8명 하반기 4명, 지역장애인 및 어른신들을 위한 일상 생활활동 지원함.
- · 서로돌봄건강리더 교육과정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로건강돌봄봉사단을 만들어 월 1회 활동을 이어감.

# 활 동 모 습



사회혁신리빙랩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학생실습(대전보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정기총회

# 3) 〈통합돌봄사업본부〉 사업평가

# (1) 주간보호센터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자체	2024.01. ~ 2024.12.	

#### 사업개요

#### o 목적

주간보호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 o 사업목표

- 조합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복지 통합 돌봄 실현
- 주치의, 공백없는 케어, 기능에 따른 분반,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 지속적인 평가과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직원 업무역량 강화,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재정적 자립 운영구조 구축
-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 의료자원 활용, 돌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신뢰 구축
- 등록 인원 50명, 평균 이용 인원 4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45명 달성 목표)

# o 총사업비

635,330,332원

# o 사업내용

- 기관 운영 사업: 기관관리, 회계·인력·시설·장비 관리
- 노인장기요양사업 :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 도모, 일상지원
- 프로그램 운영사업 : 인지능력,체력향상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욕구 및 특성 맞춤형 지원
- 직원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 직원교육, 복지 증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 자원활동가, 지역사회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주치의 시스템 강화 및 각 사업소 긴밀한 협력
- 하반기 평가 대비한 상반기 내 행정서류 점검 보완
- 입소자 분반 및 선택형 프로그램 본격 운영
- 일차의료센터 연계, 치매전문교육 등 지원으로 종사자 돌봄역량 향상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입소자 모집 확대, 새 입소자 안정적 수용체계 마련

#### 사 업 평 가

#### o 산<del>출</del>평가

- 조합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 복지 통합돌봄 실현
  - 주치의 건강상담 : 월 2회 주치의 상담(연 120명), 코로나, 독감 예방접종 등
  - 공백없는 케어 : 직접케어 인력 필수인원보다 1~2명 추가 배치
    - 월 평균 이용인원 36.5명 대비 직접케어 인력 월평균 근무 7.85명
- 기능에 따른 분반: 1개월(2월)*주2회, 총8회 진행
-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 7여종의 선택 프로그램 진행(일 1회) 연 230여회 진행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직원 업무 역량강화 : 직능별 보수교육 참석(요양보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1명)
  -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 하반기 평가 준비를 위한 수시 점검, 평가 전문 컨설팅 점검
  - 재정적 자립 운영구조 구축 : 2024년 매출액 678,823,360원(예산 565,960,140원)
-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등록인원(명)	평균이용인원(명)		
	궁속한편(경)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목표	50	35	45	40
성과	57	32	41	36.5

#### o 성과평가

- 조합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 복지 통합돌봄 실현
  - 주치의 : 주치의 건강상담을 통하여 질환 중증화 예방, 예방접종 실시로 유행성 질환 증상 완화 효과
  - 공백없는 케어 : 직접 케어인력 중 요양보호사 추가배치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
  - 기능에 따른 분반 : 지속 진행 안됨
  -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 수급자 만족도 향상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직원 업무 역량강화 : 직종별 보수교육 수강으로 전문성 향상, 업무 능력 향상
  -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 정기 평가를 대비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로 내부 환경 개선, 전산프로그램 활용도 향상, 수급자 관련 서식, 자료 보강
- 재정적 자립 운영구조 구축 : 손익분기점 달성(2024.10.)
-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 등록인원 57명, 평균이용인원 36.5명(상반기32명, 하반기41명)

#### o 과정평가

- •조합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 복지 통합돌봄 실현
  - 기능에 따른 분반: 공간 분리 없이 분반활동이 진행됨으로 수업진행에 독립성, 집중력 저하로 지속적 분반 진행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1개월(2월)만 진행함.
  -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 수급자의 자율성, 자기 결정권이라는 의미로 시작했으나 선호하는 곳으로 쏠림 현상 발생, 요일별 이용 등 직원들의 통제 및 권면이 필요함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직원 업무 역량 강화: 직접 케어 담당자들은 전문교육 수강을 권면하여도 케어 공백, 동료에게 업무 가중 부담 등으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수강하지 못함. 케어 공백이 염려 없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인원 보강 필요함.
  -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 공단 정기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분기별 점검 필요함.

(분기별 점검으로 일상속에서 평가 대비)

- 재정적 자립 운영구조 구축 : 일 평균 이용자 증가 필요. 주 2~3회 이용하는 단기 이용자, 8시간 미만 이용자, 등급외자 입소 보류 고민이 필요함
-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 등록인원은 57명으로 목표 초과하였으나 평균이용은 토요일 이용자 수 정체로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

## o 총괄평가

- 조합 내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 보건 복지 통합돌봄 실현
- 주치의 제도 운영

월 2회 진행된 주치의 진료를 통해 연간 120명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및 독감 등 질환 중증화를 예방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유행성 질환 예방 효과를 거둠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함.

- 공백 없는 케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직접 케어 인력을 필수 기준보다 1~2명 추가 배치하여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

- 기능에 따른 분반 활동

분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 및 공간 활용 방안이 요구 됨.

-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7여 종의 선택형 프로그램이 연 230회 이상 진행되었으며, 이용자 자율성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함.

-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직원 업무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직능별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능력이 향상됨.

- 정기적인 평가와 개선

하반기 평가를 대비한 수시 점검 및 평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업무 환경 및 전산 프로그램 활용도 개선됨.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평가 및 점검 으로 평가 대비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 가능.

- 재정적 자립 운영구조 구축

평균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해 단기 이용자, 8시간 미만 이용자, 등급 외자 입소를 줄여야 함.

-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대
- 등록 인원 및 평균 이용자 수

등록 인원은 58명으로 목표(50명)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평균 이용 인원은 36.5명으로 목표(40명)에 미치지 못함. 토요일 이용자 수 정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주말 프로그램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24년도 건강반 활동을 계획 예정임.





생신잔치

어버이날 행사



입소어르신 나들이(세<del>종수목원</del>)



입소어르신 활동모습

# (2) 조합원건강이음센터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만성질환 건강반	자체	2024.03 ~ 2024.12	

#### 사업개요

#### o 목적

-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의 건강반 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및 관계돌봄 실천

#### o 사업목표

- 신체건강 (정적균형, 보행속도, 일어서기, 노쇠지수 등) 향상
- 돌봄관계망 확대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7,680,000	
강사비(신체활동 및 어르신 연락 등)	5,760,000	60,000원×4개반×24회(1hr)
조 각	1,920,000	1,000원×80명×24회

#### o 사업내용

- 대상 :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건강반을 통해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65세이상 조합원

- 기간 : 3월 ~ 6월 (12회), 9월~12월(12회)

- 방법 : 건강반(4개반) 별 주1회, 건강체조 및 스트레칭, 세라밴드 활용 근력운동 지도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운영절차 :

조합원기입 및 건강반신청서 작성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및 건강상담 진행_사전 건강체조, 스트레칭, 세라밴드 운동 주1회 실시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및 건강상담 진행_사후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정적균형, 보행속도, 일어서기, 노쇠지수 향상을 위한 운동지도 커리큘럼 작성
-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사전 및 사후 실시
- 건강반 시작(초동모임) 및 마무리(건강반축제) 워크숍에 사회적 관계망 지도 그리기를 통해 건강반이 관계망 확대 및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사 업 평 가

o 산출평가: 4개반 79명이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1,436회 참여.

초동모임 74명, 체력측정112회, 걷기대회 47명, 체험활동(가방만들기) 36명 참여

o 성과평가: 어르신들이 주1회 건강체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관계돌봄을 실천하고, 체력 개선율 확인을 위해 인바디, Real PT를 통해 자세검사, 운동기능 (평형성, 순발력, 하체파워, 코어능력), 근력(상체, 하체, 어깨), 심장기능을 사전 사후로 검사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

o 과정평가 : 현재 건강체조 프로그램만 진행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합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여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총괄평가: 만성질환건강반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었음.

체력측정, 걷기대회, 체험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도움이

되었음.

# 활 동 모 습





세라밴드 운<del>동</del>

맨<del>몸운동</del>



체력측정



만성질환 건강반 걷기대회(로하스대청공원)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 건강학교	대전대학교, 자체	2024.07. ~ 2024.08.

#### 사업개요

# o 목적

- 건강반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자치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 o 사업목표

-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보 및 방법 교육 제공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1,400,000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 재직자교육프로그램 100 만원 지원예정
강사비	500,000	250,000원×2명
다과비	500,000	6,250원×80명
조 각	400,000	1,000원×80명×5회

#### o 사업내용

- 대상 : 건강반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80명

- 기간 : 7월 ~ 8월

- 방법 : 건강반 겨울방학기간 동안 총5회기 운영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

교육일정(안)	주제(안)	강사
7월 10일(수) 10:00~11:00	2024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국현정 센터장
7월 17일(수) 10:00~11:00	만성질환 이해 및 관리	황정인 방문간호팀장
7월 24일(수) 10:00~11:00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방법	외부강사
7월 31일(수) 10:00~11:00	안전교육(생활, 교통,자연재난 등)	외부강사
8월 7일(수) 10:00~11:00	나를 건강하게, 지구를 건강하게	민들레 조합원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사업수행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전대학교 링크+사업단 재직자교육프로그램을 신청
-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에 반영

# 사 업 평 가

o 산출평가: 4회로 진행. 57명이 총 168회 참여

o 성과평가: 1회 환경교육 '환경 보호, 나와 지구 돌봄' 2회 치매예방 교육 3회 금융교육 '100세 시대

슬기로운 경제생활' 4회 구강관리교육 '노인 구강 건강관리'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민들레 조합원 재능기부,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민들레 직원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전문가의 질높은 강의가 제공됨.

o 과정평가 : 건강학교가 여름에 진행이 되다 보니 무더운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날짜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함.

o 총괄평가 : 참여 어르신들께 실생활에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치매를 예방하는 '기억학교'	대덕구	2024.03 ~ 2024.12

#### o 목적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와 연대·협력 구조로 사각지대 없는 경증치매어르신 통합돌봄 환경조성을 통한 치매예방 및 노인과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

#### o 사업목표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를 예방하길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인지건강서비스 제공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20,000,000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 보조금
서비스제공비	12,000,000	인지활동서비스
서비스운영비	8,000,000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ICT활용비, 데이터사용료, 인지활동도구 이용료 등

# o 사업내용

- 대상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를 예방하길 희망하는 대덕구에 사는 60세이상 어르신 *우선순위 : 노인 75세이상 우선,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기간: 3월 ~ 12월

- 장소 : 서비스대상 가정내

- 내용 :

- ① (서비스 신청 최초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② (서비스 이용 전, 후) ICT_Cogmate 뇌건강측정(사전/사후)
- ③ (주1회, 총25회 이용) 인지활동서비스 : 인지학습교구(노메이드) 서비스 제공, ICT(메모핏) 활용 신체운동 서비스 제공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해 현수막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 서비스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 서비스제공인력 실무회의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한 만족도 평가

## 사업평가

- o 산출평가 : 경증치매어르신 31명을 주1회 1.5시간 25회 총 601회 방문서비스 실시. 방문서비스 수료율 87% 완료 (27명/31명)
- o 성과평가: 참여한 어르신(22명/26명)의 85%가 내년에도 서비스를 계속 받길 원하고 만족하였으며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함. 교구(노메이드)를 활용한 인지활동 서비스와 ICT(메모핏)를 활용한 맞춤형 운동을 통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체능력이 호전되었으며 인지활동가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대화할 상대가 생겨서 외로움을 덜게 되었음. ICT를 통한 Cogmate(뇌건강측정)검사 점수를 사전 사후로비교한 결과 뇌나이와 주의력, 집중력이 향상 또는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o 과정평가: ICT(메모핏)를 활용한 맞춤형 운동은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제공하지만 체력이 약한 고령의 대상자인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루함을 이유로 중도 포기가 많음. 이로 인해 ICT(메모핏)를 통한 운동 결 과가 기록되지 못해 대상자의 운동 여부 와 체력 향상 여부 확인이 어렵고 대상자들이 좀 더 흥미로 운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원함. 방문서비스를 통해 일대일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함께 모여서 활 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음.
- o 총괄평가: 치매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대상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함. 우울감을 가진 대상자는 중도탈락의 경우가 많아서 상담프로그램등 통합적 돌봄 연계가 필요함.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인지저하를 막을 수 있고 포괄적 대상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임.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퇴원환자돌봄서비스	대덕구	2024.03 ~ 2024.12

#### o 목적

- 의료기관 퇴원 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 도모 및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 o 사업목표

- 수술 등의 이유로 퇴원한 환자에게 자립생활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 제공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30,000,000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 보조금
서비스제공비	21,500,000	방문재활서비스
서비스운영비	8,500,000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식사대용식, 회의비 및 간담회 등

# o 사업내용

- 대상 :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덕구에 사는 60세이상 어르신 *우선순위 : 노인 75세이상 우선,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기간 : 3월 ~ 12월

- 장소 : 서비스대상 가정내 또는 요양병원

- 내용:

① (서비스 신청 최초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② (주1회, 총5회 이용) 방문재활(물리치료), 심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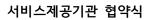
-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해 현수막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 2,3차병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품질관리, 이용자확보
-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한 만족도 평가

## 사업평가

- o 산출평가: 서비스 제공 47명(일시보호 11명, 방문재활 22명, 심리지원 1명, 영양(뉴케어)지원 13명)포괄평가 38회, 모니터링 34회
- o 성과평가: 병원 입원 후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퇴원이나 집으로 복귀가 늦어질 때 일시보호, 방문재활, 심리지원, 영양지원(뉴케어)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 퇴원환자의 회복을 도와 자립적인 일 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는 지역사회 복귀를 앞당겨 익숙한 지역과 사람 관계속에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며 건강증진과 질환의 예방적 효과가 있음.
- o 과정평가: 2,3차병원 간담회,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선지원후승인 서비스 지원 체계로 위급한 상황에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음. 서비스 의뢰 시 일주일 안에 포괄평가 진행, 서비스 연계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진행 중 이용자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욕구에 맞는 서비스 재설계와 자원을 연계함. 그러나 동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구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연이 일어나기도 하여 서비스 신청 간소화가 필요해 보임.
- o 총괄평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 퇴원이 꺼려지거나 지연되는 퇴원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은 집으로의 복귀와 자립생활을 돕는 유용한 사업이었음.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능은 노인이 가정에서 독립적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주요함으로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방문 재활의 요구도와 필요도가 높아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심리지원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이용자 발굴에 한계가 있었음. 2025년도 서비스 내용을 조절하고 연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함.

# 활 동 모 습







방문재활서비스

	U OL 70 O	
D-CAFE (치매카페)	(주)한국에자이	2024.03 ~ 2024.12.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 사 업 개 요

# o 목적

-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문화 조성

# o 사업목표

- 치매 당사자와 가족, 주민 간의 교류와 관계망 형성
- 치매이해 및 돌봄기법을 배움으로써 당사자 및 돌봄 가족 삶의 질 향상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3,000,000	* (주)한국에자이 보조금
프로그램진행비	2,559,911	치매정보 공유 및 휴머니튜드케어 배우기
운영비	440,089	홍보 및 다과, 환경조성비

## o 사업내용

- 대상 : 치매가족 및 당사자인 조합원 20여명

- 기간 : 6월~12월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 D-CAFE(Dementia Cefe, 치매카페)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

편안하게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교육일정(안)	주제(안)	강사(안)
6월 15일(토) 10:00~11:30	마음산책, 건강돌봄총론	박봉희센터장 (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6월 22일(토) 10:00~11:30	치매정책이야기	허기명차장 (대전사회서비스원)
6월 29일(토) 10:00~11:30	치매환자 인간중심 의사소통	윤주영교수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7월 6일(토) 10:00~11:30	휴머니튜드케어 기법	김진옥원장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7월 13일(토) 10:00~11:30	치매환자 의료적 돌봄	나준식원장 (민들레의원)
7월 20일(토) 10:00~11:30	치매당사자와 하는 예술활동	송정은대표 (아트온어스)
8월 3일(토) ~ 12월 7일(토) 10:00~11:00 (매월 첫째주 토요일)	치매자조모임	마음의숲사회적협동조합 (자원활동)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원, 지역주민,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이용 가족에게 사업소개 및 홍보
- 치매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간 협력관계 형성

# 사 업 평 가

o 산출평가 : 총23명의 조합원이 교육신청, 남 5명, 여 18명으로 50대이상으로 민들레 의료기관 이용경험을 했거 나 건강반 참여 조합원임. 총6회기 동안 70%이상 출석율을 보였고 모든 회기 100%참석한 8명의 조합원에게 수료증 발급하였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2%이상 만족을 보임.

o 성과평가 :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조합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o 과정평가 : 과정마다 마음산책시간을 통해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소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이

매우 높았음. 매회기 강사들의 전문적 소양이 돋보였으며, 유익한 정보로 교육신청자들의 치매에 대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교육시청자 중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다른 조합원에게 참여기회가 돌아가지 못함. 향후 계획시 소정의 교육참가비를 받아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자료를 제작하여교육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을 느낌.

o 총괄평가 : 총 6회기 동안 진행한 '치매이해학교'의 핵심가치는 '휴머니튜드'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돌봄기법이 인간중심돌봄기법으로 변화되어야 함.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교육취지가 전달되었으며, 조합원들의 치매에 대한 교육필요성 및 요구도가 높아 '인간중심 돌봄'에 대한 치매 교육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할 필요성을느낌.

# 활 동 모 습





마음산책

돌봄경험 나눔







수료증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원관리체계구축	자체	2024.03. ~ 2024.12.

# o 목적

- 조합원 등록관리 및 교육을 통해 민들레 이용 및 활동 확대

#### o 사업목표

- 신입조합원 및 대의원 교육
- 조합원 기본정보 DB 관리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11,030,000원	
브로셔제작&발송	8,180,000	브로셔제작 8,000,000원 우편발송료 600원×300명=180,000원
홍보물품	1,000,000 민들레로고 3D인쇄 마스크, 대일밴드 1,000원×1,000개=1,000,000원	
교육운영비	850,000	다과 10,000원×20명×3회=600,000원 강사비 250,000원×1명=250,000원
임원워크숍	1,000,000	다과 및 운영비 1,000,000원

## ο 사업내용

- 대상 : 신입조합원, 대의원

- 기간 : 3월~12월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① 조합원 등록관리

: 조합원 가입 후 민들레 브로셔 및 홍보물품 발송

: 가입신청서에 조합원 연령, 직업, 희망하는 활동 등 DB 관리

② 조합원교육

구분	교육일정(안)	주제(안)	비고
1101 고향이	6월 28일(금) 19:00	민들레 소개 및 담화	상반기가입
<u>신입조합원</u>	11월 22일(금) 19:00	민들레 소개 및 담화	하반기가입
대의원	5월 25일(토) 10:00	민들레 활동 소개 대의원 역할 및 활동 간담회	
임원워크숍	4월 27일(토) 10:00	24년 민들레 조합활동 시스템전환 워크숍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 가입 시, 신입조합원 교육에 대한 적극 안내 및 홍보
- 가입신청서에 민들레 활동에 대한 의견 및 욕구 반영

# 사 업 평 가

## 신입조합원 워크숍

목표 : 우리조합의 소개 및 역사, 활동 등을 소개하여 조합을 이해하고 참여(출자, 운영, 이용 등)을 촉진과 조합원 의 의견을 수렴한다.

o 산출평가 : 총 2회 진행(2024.6.26.(수) / 25명 참석) (2024.11.21.(목) / 7명 참석

o 성과평가 : 조합원으로 기입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조합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o 과정평가: 사전설문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 워크숍 당일 참석자들의 우리조합에 대한 인식과 생각,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o 총괄평가 : 신입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소개와 활동,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설문에

욕구조사를 하여 조합소개 뿐만이 아니라 친밀감을 키우는 활동을 병행했으면 한다.

# 대의원 워크숍

목표: 대의원의 건강자치력 향상과 2024년 민들레 활동소개 및 평가, 의견청취

o 산출평가: 2024.11.1.(금) 22명 참석

o 성과평가 : 대의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청취(건강반의 지속, 체육활동, 새로운 사업 등)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o 과정평가: 사전에 행사구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강좌를 실시.

o 총괄평가 : 희망하는 것을 조사하여 워크숍을 계획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 건강돌봄환경조사

o 산출평가: 설문 참여 조합원 561명(목표 500명, 달성률 106%)

o 성과평가: 조합원의 건강과 돌봄 욕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평소 질문하기 어려웠던 개인 적 요청이 있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음. 조합원의 연령층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를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향후 사업 방향을 점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o 과정평가: 1.2차 온라인 설문과 3차 오프라인 설문으로 총 3회 진행하였음. 온라인 커피쿠폰 제공이 참여 촉진과 참여률을 높이는 효과적 방법이 됨. 40~50대 조합원 참여가 50%대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조합원을 대상으로 종이 설문을 진행하여 참여 경로를 확대함.

o 총괄평가: 건강과 돌봄에 대한 조합원의 생각을 듣고, 조합의 건강·돌봄 사업 및 서비스 개발에 기본 방향이 되는 참고 자료로 유용함. 그러나 온라인 설문이 돌봄 욕구와 필요가 큰 노년층 조합원에겐 접근성이 쉽지 않았던 반면, 부모 돌봄 이슈가 생기는 중·장년 조합원에겐 조합의 돌봄사업에 대하여 필요를 느끼고 신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활 동 모 습



조합 소개 브로슈어



신입조합원교육(2024, 6, 26)

민들레 조합원님!
조합원님의 건강돌봄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
(마스크, 밴드)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설문 안내



의료기관 설문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홍보관리	자체	2024.03. ~ 2024.12.

#### o 목적

- 홍보매체 및 내용을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조합원 참여를 통해 다양한 홍보채널 마련

# o 사업목표

- 민들레 사업 및 활동내용을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홍보
- 조합원 참여로 민들레 활동 소개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4,925,000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4,000,000	홈페이지업데이트 및 카카오톡채널 4,000,000원
민들레기자단_활동비	625,000	활동비 25,000원×5명×5회=625,000원
민들레기자단_교육운영비	300,000	강사비 250,000×1명×1회=250,000원 다과 5,000원×10명×1회=50,000원

# o 사업내용

- 대상 : 조합원, 지역주민

- 기간: 3월~12월

- 내용 :

- ① 스스로조합비 기부 조합원 관리
- : 기부금 사업 내용 상/하반기 카드뉴스 제작
- ② 소식지 제작
- : 상/하반기 민들레 활동소개 온/오프라인용 소식지 제작
- ③ 홈페이지 관리
- : 민들레 소식 및 보도자료 등 매월 업데이트
- ④ 민들레기자단
- :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민들레 사업 및 행사 시 현장스케치 및 인터뷰, 기사작성
-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조합원 참여를 위해 문자, 카톡채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 가입신청서에 민들레 활동에 대한 의견 및 욕구 반영

# 사 업 평 가

목표 : 조합소개, 조합원의 조합활동 관심 및 참여 유도

o 산출평가 : 민들레 브로슈어 리뉴얼 및 홍보물품(머그컵, 밴드, 마스크) 제작, 자원활동 모집 웹자보를 제작, 홍

보하여 의료기관과 연계

o 성과평가 : 신규조합원에게 매월 브로슈어와 홍보물품을 발송, 조합행사 시 홍보물품 나눔

o 총괄평가 : 조합의 관심과 참여에 많은 기여

홈페이지 : 리뉴얼을 통해 접속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변경, 게시내용의 최신화 및 편리화

# 견학 및 인터뷰

- 견학·인터뷰 신청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음
- 서울 종로구 보건소 견학과, 제주 mbc '늙어가는 섬' 촬영 및 인터뷰, kbs'화제집중'인터뷰, 새알미디어 촬영 및 인터뷰, 의료사협 준비팀 견학이 있었음
- 조합 방문 목적과 요청 사항에 따라 적절한 담당자 배정으로 응대함.

## 소식지

총 6회 월 별 조합 소식을 웹자보로 제작하여 건강반 중심으로 배포함. 조합원들에게 정보 제공으로 조합 사업 참여와 이용을 이끌고 조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활 동 모 습





민들레 소식지(8월)

서울 종로구 보건소 견학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활동	자체	2024.03. ~ 2024.12.	

## o 목적

- 조합원의 건강반 활동 및 자원활동을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 o 사업목표

- 다양한 조합원 활동 기회 마련
- 조합원의 건강자치력 향상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22,800,000	
건강반 활동비	17,000,000	*기부금
건강반 간담회	150,000	다과 5,000원×30명=150,000원
건강반축제	4,250,000	대관료 1,500,000원 우수건강반 200,000원×10개반=2,000,000원 다과 5,000원×150명=750,000원
자원활동가 간담회	200,000	다과 5,000원×20명×2회=200,000원
조각 <del>통</del> 장제작	1,200,000	제작비 8,000원×150개=1,200,000원

# o 사업내용

- 대상 : 조합원 - 기간 : 3월~12월

- 내용 : ① 건강반

- : 건강반 간담회 개최 (건강반 운영 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의 장 마련)
- : 건강반축제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며, 공동체를 돌보는 내용 확산)

# ② 자원활동가 조직

: 주간보호센터, 검진, 의원, 지역주민의 돌봄 및 봉사

## ③ 조각관리

: 운영지침 수정(기부금 사용에 따른 건강촉진으로서 사용 등 기준 마련), 사용처 조정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건강반에 참여했던 반장 및 조합원의 의견 청취
- 건강반 활동에서 자원활동으로 확대

# 사업평가

# 건강반

목표 : 조합원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운영하여 나와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자치력 향상. 모집목표: 45개 반(반원 350명)

o 산출평가 : 모집목표 45개 반 중 38개 반(280명) 모집(만성질환 건강반 포함) o 성과평가 : 체력측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조합행사에 참여

사전 체력 <i>측</i> 경	넘	의료사협 30주년 행사 참여	걷기대회 참여	자원활동 (신청자)	사후 체력측정	송년회 (건강반축제)
	-	16명 / 7개 반	93명 / 20개 반	45명 / 15개 반	42명 / 11개반	121명 / 21개반

o 과정평가: 건강반이 주체가 되어 걷기대회를 진행(24.09.28 / 93명, 20개 반 참여)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상/하반기 체력측정을 실시 자원활동을 모집하여 의료기관 및 주간보호센터에 연계

o 총괄평가 : 조합과의 접점이 부족했는데 건강반이 주체가 되어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고, 조합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각

목표 : 건강화폐'조각'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 촉진, 조합활동 참여 동기부여 강화 및 조각 이용 활성화 o 산출평가 :

 예산	발급 조각	사용 조각	비고
5,000,000조각	2,190,000조각	2,268,000조각	(23.12월 발급된 조각사용)

o 성과평가 : 조각 발행 및 운용 세부지침 개정 및 신규 사용처 발굴

o 과정평가: 발급부서(조합원건강이음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세부지침

을 개정

o 총괄평가 : 신규 사용처의 발굴이 필요

# 활 동 모 습





건강반 설명회

건강반 선정위원회



건강반과 함께하는 계족산 걷기대회



송년회(건강반 축제)

# 4) <경영지원실> 사업평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부금 활용	자체	2024.01. ~ 2024.12.	

# 사 업 개 요

## o 목적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등으로 지역사회 보건예방사업 활동

# o 사업목표

- 지역사회 활동 및 외부기관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 o 예산(안)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보건예방사업				
구분	운영비	의료기관 의료비	지역사회 의료센터	외부기관 연계	건강반 활동비	조각	외부기관 연계	시설 개선금	합계
금액 (만원)	300	1,800	450	700	1,700	500	300	300	6,050
비율(%)	5	30	7	12	28	8	5	5	100

※예비비 40,538원

# o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과 상담 (이주노동자, 미등록아동, 성매매피해여성, 65세이상 노인, 장애가족등 취약계층)
- 조각 사용 관리
- 지역사회, 복지관, 기업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 사 업 평 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보건예방 활동				
구분	운영비	의료기관 의료비	외부기관 연계	건강반 활 <del>동</del> 비	건강화폐 조각	외부기관 연계	시설개선금	합계
예산액 (만원)	300	2,250	700	1,700	500	300	300	6,050
집행액 (원)	778,500	1,547,860	1,966,570	12,660,346	2,268,000	-	3,000,000	22,221,276
대상자 (명)	-	58	106	200	110	-	-	474
집행 <del>율</del> (%)	26	7	28	75	45	-	100	37

- o 의료비 지원대상: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이민자 등 취약계층
- o 2024년 집행액(37% 집행)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비 : 3,514,430원
- 보건예방 사업비(건강반 활동비 등): 17,928,346원
- 관리비 : 778,500원

# Ш

# 1. 결산 보고 총평

2024년 결산보고서를 통해 당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 1. 재무 성과

2024년 동안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12% 증가하여 총 3억 원에 달했습니다.

# 2. 자산 및 부채

2024년 말 기준, 총 자산은 33억 원이며 총 부채는 19억 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로, 재무 건전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 3. 주요 사업소 부문 성과

- 일차의료기관는 매출이 20% 증가로 성장을 보였으며, 의원.검진은 효율적인 진료시스템 구조와 여러 시범사업에 대한 학습 및 참여, 한의원은 한의재택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등 매출 증대와 함께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 지역사회의료는 방문의료(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수요가 많아졌으며,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주치의건강상담, 구강관리등과 함께 넓은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 가면서 어르신들의 입소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상승 높아졌습니다.

## 4. 결론

2024년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해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합원과 민들레 구성원들의 발전과 장점을 통해 민들레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과 민들레 구성원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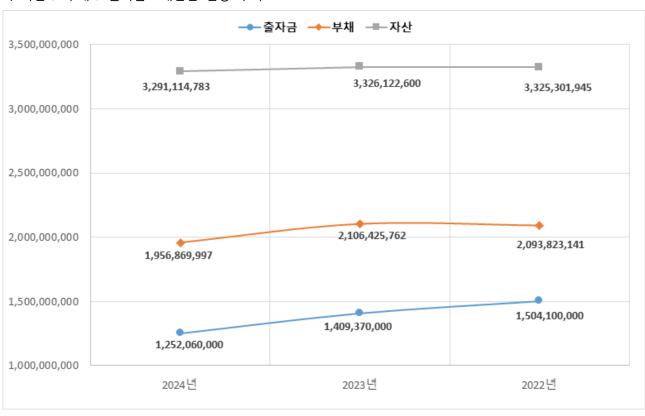
# 2. 자산 / 부채 / 출자금 현황

# 1) 자산 / 부채 / 출자금 3개년간 내역

(단위: 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자산	3,291,114,783	3,326,122,600	3,325,301,945
부채	1,956,869,997	2,106,425,762	2,093,823,141
출자금	1,252,060,000	1,409,370,000	1,504,100,000

# 2) 자산 / 부채 / 출자금 3개년간 변동 추이



# 3. 주요 결산 실적

# 1) 예산 대비 부서별 매출 / 손익 실적

구 분	2024년도	실적(원)	2024년도	2024년도 예산(원)		
ਾਂ ਦ	매 출	손 익	매 출	손 익	매 출	손 익
누 계	5,208,903,402	271,857,948	4,760,738,138	86,547,886	109	314
의 원/검 진	2,443,916,498	494,807,156	2,432,253,645	643,458,078	100.5	76.9
한 의 원	360,306,356	46,907,370	306,341,094	4,164,776	117.6	1126.3
치 과	426,286,295	6,765,353	501,183,259	59,906,279	85.1	11.3
지역사회 의료센터	1,306,115,723	360,721,075	950,000,000	102,209,738	137.5	352.9
주간보호센터	670,028,530	-3,409,214	565,960,140	-60,530,458	118.4	194.4
조합원건강 이음센터	-	-202,135,896	-	-206,296,240	-	102.0
경영지원실	2,250,000	-431,797,896	5,000,000	-456,364,287	45.0	105.4

# 2) 2024년 예산 대비 손익계산서

	구분	2024년 예산(원)	2024년 결산(원)	예산 대비(%)	총액 대비(%)
	수입총계	4,768,276,138	5,283,382,972	110.8	100.0
	의료기관수입	3,239,777,998	3,230,509,149	99.7	61.1
사업	지역사회의료센터	950,000,000	1,306,115,723	137.5	24.7
수익	주간보호센터	565,960,140	670,028,530	118.4	12.7
	경영지원실	5,000,000	2,250,000	45.0	0.0
	정부지원 및 보조금	3,000,000	72,747,160	2424.9	1.4
사업외 수입	후원금	3,500,000	457,296	13.1	0.0
	기타	1,038,000	1,275,114	122.8	0.0
	지출총계	4,681,728,252	5,011,525,024	107.0	100.0
	사업비	46,411,000	25,286,163	54.5	0.5
	판관비	4,547,235,653	4,857,921,143	106.8	96.9
사업외비용		88,081,599	81,580,462	92.6	1.6
법인세등			46,737,256		0.0
	손익합계	86,547,886	271,857,948	314.1	

# 4. 자본 결산

# 1) 자본조성계획과 현황

(단위: 원)

분 류	항 목	예상 금액	집행 현황
	신입조합원	10,000,000	10,830,000
ネフレフ	조합원증자	25,000,000	37,383,500
출자금	조합원감좌&탈퇴		205,633,500
	출자금 소계	35,000,000	-157,420,000
기 조	기 조성 미사용 자본금 (전년도에서 이월)		701,559,664
	합 계	736,559,665	544,139,664

# 2) 운용 계획과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기관	품 명	예상금액	집행 현황
	검진	내시경 검사기기	_	34,000,000
의료기기	치과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1,000,000	-
		의료기기 소계	1,000,000	34,000,000
4 TI E 01101	경영지원실	POS 유지보수	2,000,000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소계	2,000,000	-
차입금 상환	금융	권 및 조합원 차입금 일부 상환	178,859,067	186,043,109
사업준비금		운용예비비	554,700,598	324,096,555
합계			736,559,665	544,139,664

# 5. 재무상태표

1) 통합 재무상태표

_,_	제22	(당)기	제21	(전)기	
과목		· ^{· · ·} 금액	금액		
자 산		-		•	
I.유 동 자 산		957,360,435		806,292,030	
(1)당 좌 자 산		911,116,538		769,055,730	
· 현 금		235,640		375,840	
보 통 예 금	340,497,688		285,329,527		
기 금 사 업 비 ( 차 감 )	80,799,301	259,698,387	82,962,749	202,366,778	
기 타 제 예 금		60,000,000		60,000,000	
정 기 예 . 적 금		54,000,000		18,000,000	
미 수 금		465,795,405		467,185,970	
선 급 금		70,225,206		19,086,762	
선 급 비 용		846,570		1,725,050	
선 납 세 금		7,987,460		315,330	
(2)재 고 자 산		46,243,897		37,236,300	
의 약 품		25,894,441		16,159,067	
의 료 소 모 품		20,349,456		21,077,233	
Ⅱ.비 유 동 자 산		2,333,754,348		2,519,830,570	
(1)투 자 자 산		65,687,926		65,733,304	
출 자 금		65,687,926		65,733,304	
(2)유 형 자 산		2,132,741,596		2,316,929,432	
토 기		871,788,445		871,788,445	
물 건 물	846,978,292		846,978,29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0,723,186	716,255,106	109,548,731	737,429,561	
의 료 기 계	486,570,850		474,170,8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82,536,456	104,034,394	381,142,945	93,027,905	
시 설 장 치	874,300,940		874,300,94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89,633,478	384,667,462	337,226,352	537,074,588	
비 품	130,523,700		130,523,7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4,527,511	55,996,189	52,914,767	77,608,933	
(3)무 형 자 산		1,554,826		3,397,834	
소 프 트 웨 어		1,554,826		3,397,834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133,770,000		133,770,000	
임 차 보 증 금		133,770,000		133,770,000	
자 산 총 계		3,291,114,783		3,326,122,600	
부 채					
I.유 동 부 채		948,089,997		934,995,762	
외 상 매 입 금		81,100,744		72,349,938	
미 지 급 금		539,009,029		367,260,493	
예 수 금		80,170,505		159,605,045	
부 가 세 예 수 금				27,270	
당 좌 차 월		148,738,653		247,574,660	

(단위: 원)

	제22(당)기	제21(전)기
과목	금액	금액
선 수 금	0	199,800
단 기 차 입 금	60,000,000	70,000,000
미 지 급 세 금	39,071,066	17,978,556
Ⅱ.비 유 동 부 채	1,008,780,000	1,171,430,000
장 기 차 입 금	1,008,780,000	1,171,430,000
부 채 총 계	1,956,869,997	2,106,425,762
자 본		
I.자 본 금	1,252,060,000	1,409,370,000
출 자 금	1,252,060,000	1,409,370,000
Ⅱ.자 본 잉 여 금	0	0
Ⅲ.자 본 조 정	0	0
№ .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이 익 잉 여 금	82,184,786	189,673,162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82,184,786	189,673,162
(당 기 순 이 익)		
당기: 271,857,948원		
전기: 82,948,034원		
자 본 총 계	1,334,244,786	1,219,696,838
부 채 및 자본총계	3,291,114,783	3,326,122,600

# 6. <del>손</del>익계산서

1) 통합 손익계산서 (단위: 원)

71. 🗆	제22(	당)기	제21(7	<u>택</u> )기
과 목	금	객	금역	H
I.매 출 액		5,208,903,402		4,418,304,974
임 대 료 수 입	2,000,000		4,445,460	
의 원 수 입 금	3,013,094,240		2,538,782,588	
한 의 원 수 입 금	360,306,356		278,491,904	
치 과 수 입 금	426,286,295		477,317,390	
주 간 보 호 센 터 본 인 부 담 금	0		71,804,220	
검 진 센 터 수 입 금	714,727,981		718,402,292	
주 간 보 호 센 터 수 입 금	670,028,530		258,470,450	
주간보호센터장기의료수입	0		69,160,670	
조 합 본 부 수 입 금	22,460,000		1,430,000	
Ⅱ.매 출 원 가		409,258,471		347,401,557
식 자 재 매 출 원 가	_	44,317,222	10 10:	245,533,624
기초식자재고액	0		19,681,287	
당기식자재매입액	44,317,222		242,011,404	
기 말 식 자 재 재 고 액	0	0/5 450 0 40	16,159,067	0.45 500 (0.4
의 약 품 매 출 원 가	1/ 150 0/7	265,450,042	10 /01 207	245,533,624
기초의약품재고액	16,159,067		19,681,287	
당기의약품매입액	275,185,416		242,011,404	
기 말 의 약 품 재 고 액 의 료 소 모 품 매 출 원 가	25,894,441	00 401 207	16,159,067	101 0/7 022
	21 077 222	99,491,207	21 201 471	101,867,933
기 초 의 료 소 모 품 재 고 액   당 기 의 료 소 모 품 매 입 액	21,077,233 98,763,430		21,281,471 101,663,695	
│ 당 기 의 료 소 모 품 매 입 액 │ │ 기 말 의 료 소 모 품 재 고 액 │	20,349,456		21,077,233	
┃	20,347,430	4,799,644,931	21,077,233	4,070,903,417
™ · 케 · 볼 · 링 · 커 · ᄀ     N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4,473,948,835		3,938,432,097
지 기 <b>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b>	3,026,588,420	4,470,740,000	2,611,036,605	0,700,402,077
(인건비지원금)	0		65,904,480	
집 급	1,398,000		1,470,530	
퇴 직 급 여	203,799,030		177,235,280	
복 리 후 생 비	219,855,905		243,885,073	
여 비 교 통 비	31,060,946		23,722,657	
통 신 비	8,973,513		9,138,705	
수 도 광 열 비	4,413,613		4,304,216	
전 력 비	21,813,191		20,513,557	
세 금 과 공 과 금	86,972,440		77,574,550	
감 가 상 각 비	240,921,169		245,403,652	
지 급 임 차 료	89,372,122		78,343,720	
수 선 비	31,382,200		7,952,700	
보 험 료	60,295,076		61,475,494	
( 보 험 료 지 원 금 )	1,327,770		6,671,110	
차 량 유 지 비	3,587,500		2,111,130	
운 반 비	381,300		661,900	

71. 8	제22(	당)기	제21(	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교 육 훈 련 비	3,012,000		2,957,400	
도 서 인 쇄 비	4,925,590		3,129,300	
회 의 비	3,595,390		6,507,180	
소 모 품 비	69,974,826		74,765,024	
지 급 수 수 료	284,899,033		261,036,826	
대 손 상 각 비	0		6,452,850	
건 물 관 리 비	18,464,070		17,005,40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1,843,008		2,562,675	
연 대 활 동 비	1,577,740		6,547,140	
조 직 활 동 비	10,396,210		7,649,570	
기 금 사 업 비	50,403,928		114,200,262	
(기금사업비지원금)	50,403,928		114,200,262	
홍 보 활 동 비	6,704,823		156,861	
인 적 용 역 비	23,868,990		16,498,890	
(인적용역비지원금)	2,750,000		5,296,750	
조 합 원 건 강 지 원 비	0		30,991,752	
취 약 건 강 지 원 비	0		5,373,800	
기 부 금 사 업 비	19,066,426		29,711,717	
(기부금사업지원금)	19,066,426		29,711,717	
외 주 용 역 비	17,950,500		9,840,000	
V . 영 업 이 익		325,696,096		132,471,320
VI.영 업 외 수 익		74,479,570		65,114,130
이 자 수 익	278,986		2,171,390	
정 부 지 원 및 보 조 금	72,747,160		26,800,000	
기 부 금 수 입	457,296		34,449,420	
잡 이 익	996,128		1,693,320	
VII.영 업 외 비 용		81,580,462		95,504,370
이 자 비 용	71,795,995		89,634,066	
기 부 금	400,000		800,000	
보 상 비	2,700,000		4,746,900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5,666,667		0	
잡 손 실	1,017,800		323,404	
Ⅷ .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318,595,204		102,081,080
IX . 법 인 세 등		46,737,256		19,133,046
법 인 세 등	46,737,256		19,133,046	
X . 당 기 순 이 익		271,857,948		82,948,034

- 매출액 : 주간보호센터본인부담금, 주간보호센터장기의료수입금 과목을 주간보호센터 수입금 과목 변경.
- 판매비와관리비 : 조합원건강지원비, 취약건강지원비 과목은 2023년 회계감사 시 매출 계정과목(매출삭감) 변경 권고.

# 7. 부서별 손익계산서

1) 의료기관, 지역사회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조합원건강이음센터

계정과목	의원•검진	한의원	치과	지역사회 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조합원건강 이음센터
I . 매 출 액	2,443,916,498	360,306,356	426,286,295	1,306,115,723	670,028,530	
Ⅱ . 매 출 원 가	228,723,648	44,977,612	27,286,003	63,953,986	44,317,222	
Ⅲ.매출총 이익	2,215,192,850	315,328,744	399,000,292	1,242,161,737	625,711,308	
Ⅳ.판매비와관리비	1,712,617,543	268,590,040	392,362,344	882,185,744	628,833,131	208,694,633
직 원 급 여	1,224,977,500	202,765,280	261,417,530	671,221,350	388,937,440	136,149,480
잡 급		1,398,000				
퇴 직 급 여	70,334,270	14,468,730	17,746,610	48,012,480	31,404,410	10,262,330
복 리 후 생 비	81,619,096	15,277,020	16,906,150	40,567,869	24,102,120	10,415,990
여 비 교 통 비	215,000	234,450		15,748,188	10,533,784	896,854
통 신 비	3,095,266	469,450	630,695	3,270,140	742,369	274,585
수 도 광 열 비	848,390	463,390	372,660	493,750	1,677,221	
전 력 비	10,867,069	3,700,483	4,110,714	1,572,029		24,275
세금과 공과금	28,285,610	7,031,120	7,883,220	16,884,080	12,654,720	5,748,330
감 가 상 각 비	63,144,039	10,570,892	12,151,392	3,906,666	28,864,364	4,923,169
지 급 임 차 료	28,600,000		15,600,000		31,972,122	13,200,000
수 선 비	19,740,500	289,600		23,000	8,706,000	
보 험 료	23,455,880	4,054,180	5,040,850	9,733,110	10,480,216	2,502,180
(보험료 지원금)				-1,070,450		
차 량 유 지 비					3,587,500	
운 반 비	55,500	174,000		3,000	3,000	
교 육 훈 련 비	1,183,000	238,000	430,000	828,000	304,000	
도 서 인 쇄 비	996,380	160,800	240,000			2,145,000
회 의 비	1,332,550	152,200	64,600	856,900	319,140	45,000
소 모 품 비	18,292,156	3,315,890	7,718,850	7,541,960	25,400,460	1,351,460
지 급 수 수 료	130,153,149	3,542,055	41,569,073	60,495,672	8,886,325	1,916,500
건 물 관 리 비	1,584,000		480,000		12,854,030	3,546,040
무형고정자산상각	112,608	270,000				
연 대 활 동 비				98,000		239,000
조 직 활 동 비						9,373,740
기 금 사 업 비						1,250,000
(기금사업비지원 금 )						-1,250,000

(단위: 원)

계정과목	의원•검진	한의원	치과	지역사회 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조합원건강 이음센터
홍 보 활 동 비		14,500			1,500,000	40,700
인 적 용 역 비	3,725,580			2,000,000	7,953,410	7,390,000
(인적용역비지원)						-1,750,000
기 부 금 사 업 비						12,660,346
(기부금사업지원 금 )						-12,660,346
외 주 용 역 비					17,950,500	
V . 영업 이익	502,575,307	46,738,704	6,637,948	359,975,993	-3,121,823	-208,694,633
VI.영업 외 수익	111,856	696,226	127,405	745,082	212,609	6,558,737
이 자 수 익	11,719	5,892	7,693	15,017	39,754	8,728
정부지원및보조금	100,000	100,000	100,000	730,000		6,550,000
기 부 금 수 입						
잡 이 익	137	590,334	19,712	65	172,855	9
VII.영업 외 비용	7,880,007	527,560			500,000	
이 자 비 용						
기 부 금						
보 상 비	2,200,000				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666,667					
잡 손 실	13,340	527,560				
VⅢ.법인세 차감전 이 익	494,807,156	46,907,370	6,765,353	360,721,075	-3,409,214	-202,135,896
Ⅸ . 법 인 세						
당 기 순 이 익	494,807,156	46,907,370	6,765,353	360,721,075	-3,409,214	-202,135,896
안분후당기순이익	284,284,518	8,429,352	-27,364,132	283,772,691	-58,155,707	-219,108,775

계정과목	경영지원실	퇴원환자 <u>돌봄</u> 서비스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u>돌봄</u>	<del>돌봄</del> 리빙랩
I . 매 출 액	2,250,000			
Ⅱ . 매 출 원 가				
Ⅲ . 매 출 총 이 익	2,250,000			
Ⅳ.판매비와관리비	380,665,400			
직 원 급 여	141,119,840			
잡 급				
퇴 직 급 여	11,570,200			
복 리 후 생 비	30,967,660			
여 비 교 통 비	3,432,670			
통 신 비	491,008			
수 도 광 열 비	558,202			
전 력 비	1,538,621			
세금과 공과금	8,485,360			
감 가 상 각 비	117,360,647			
지 급 임 차 료				
수 선 비	2,623,100			
보 험 료	4,771,340			257,320
(보험료 지원금)				-257,320
차 량 유 지 비				
운 반 비	145,800			
교 육 훈 련 비	29,000			
도 서 인 쇄 비	1,383,410			
회 의 비	825,000			
소 모 품 비	6,354,050			
지 급 수 수 료	38,336,259			
건 물 관 리 비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1,460,400			
연 대 활 동 비	1,240,740			
조 직 활 동 비	1,022,470			
기 금 사 업 비		29,000,000	19,865,500	288,428
(기금사업비지원금)		-29,000,000	-19,865,500	-288,428
홍 보 활 동 비	5,149,623			
인 적 용 역 비	1,800,000	1,000,000		
(인적용역비지원금)		-1,000,000		
기 부 금 사 업 비	6,406,080			

계정과목	경영지원실	퇴원환자 <u>돌봄</u> 서비스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u>돌봄</u>	<del>돌봄</del> 리빙랩
(기부금사업지원금)	-6,406,080			
외 주 용 역 비				
V . 영업 이익	-378,415,400			
VI.영업 외 수익	66,027,655			
이 자 수 익	190,183			
정부지원및보조금	65,167,160			
기 부 금 수 입	457,296			
잡 이 익	213,016			
VI.영업 외 비용	72,672,895			
이 자 비 용	71,795,995			
기 부 금	400,000			
보 상 비				
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잡 손 실	476,900			
VII.법인세 차감전 이익	-385,060,640			
⋉ . 법 인 세	-46,737,256			
당 기 순 이 익	-431,797,896			
안분 후 당기순 이익	0			

# 8. 예산 대비 집행계산서

관	항	목	2024년 예산(원)	2024년 결산(원)	예산대비(%)	총액대비(%)
	<u>-</u>	수입총계	4,768,276,138	5,283,382,972	110.8	100.0
	의원, 건강검진센터	2,432,253,645	2,443,916,498	100.5	46.3	
	사업	한의원	306,341,094	360,306,356	117.6	6.8
		치과	501,183,259	426,286,295	85.1	8.1
	수익	방문의료센터	950,000,000	1,306,115,723	137.5	24.7
		지역사회의료센터	565,960,140	670,028,530	118.4	12.7
수입		경영지원실	5,000,000	2,250,000	45.0	0.04
1 8		사업수입 합계	4,760,738,138	5,208,903,402	109.4	98.6
		이자수익	258,000	278,986	108.1	0.01
	사업외	정부지원및보조금	3,000,000	72,747,160	2424.9	1.4
	수익	기부금 수입	3,500,000	457,296	13.1	0.01
		잡이익	780,000	996,128	127.7	0.02
		사업외수입 합계	7,538,000	74,479,570	988.1	1.4
	7	지 <mark>출총</mark> 계	4,681,728,252	5,011,525,024	107.0	100.0
		교육훈련비	4,411,000	3,012,000	68.3	0.1
		회의비	13,000,000	3,595,390	27.7	0.1
	사업비	연대활동비	4,350,000	1,577,740	36.3	0.03
	\\ \\ \\ \\ \\ \\ \\ \\ \\ \\ \\ \\ \\	조직활동비	17,650,000	10,396,210	58.9	0.2
		홍보활동비	7,000,000	6,704,823	95.8	0.13
		사업비 합계	46,411,000	25,286,163	54.5	0.5
		의약품비등(재고반영)	402,622,780	409,258,471	101.6	8.2
		직원급여	2,627,780,080	3,026,588,420	115.2	60.4
71.5		잡급	34,616,880	1,398,000	4.0	0.03
지출		퇴직급여	195,258,840	203,799,030	104.4	4.1
		복리후생비	214,419,680	219,855,905	102.5	4.4
	   판매	여비교통비	23,950,000	31,060,946	129.7	0.6
	관리비	통신비	9,654,000	8,973,513	93.0	0.2
		수도광열비	4,320,000	4,413,613	102.2	0.1
		전력비	22,944,000	21,813,191	95.1	0.4
		세금과공과금	104,208,740	86,972,440	83.5	1.7
		감각상각비	257,751,600	240,921,169	93.5	4.9
		지급임차료	89,280,000	89,372,122	100.1	1.8

관	항	목	2024년 예산(원)	2024년 결산(원)	예산대비(%)	총액대비(%)
		수선비	44,420,000	31,382,200	70.6	0.6
		보험료	60,498,048	58,967,306	97.5	1.2
		차량유지비	2,400,000	3,587,500	149.5	0.1
		운반비	492,000	381,300	77.5	0.01
		도서인쇄비	11,744,000	4,925,590	41.9	0.1
		소모품비	41,020,000	69,974,826	170.6	1.4
		지급수수료	354,106,585	284,899,033	80.5	5.7
		건물관리비	17,064,000	18,464,070	108.2	0.4
		무형고정자산상각	2,829,420	1,843,008	65	0.04
		인적용역비	19,375,000	21,118,990	109.0	0.4
		기부금사업비	35,000,000	19,066,426	54.5	0.4
		기부금사업비지원금	-35,000,000	-19,066,426	54.5	-0.4
		외주용역비	6,480,000	17,950,500	277.0	0.4
		판관비 합계	4,547,235,653	4,857,921,143	106.8	98.0
		이자비용	82,331,599	71,795,995	87.2	1.4
		기부금	500,000	400,000	80.0	0.01
	사업외	보상비	5,000,000	2,700,000	54.0	0.1
	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5,666,667		0.1
		잡손실	250,000	1,017,800	407.1	0.02
		사업외비용 합계	88,081,599	81,580,462	92.6	1.6
		법인세등		46,737,256		0.9
	연구	간손익합계	86,547,886	271,857,948	314.1	

# 제5호 의안 2024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2024년 당기순이익 271,857,94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손실금 189,673,162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25조, 제33조 제5호

# *정관 제25조(법정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관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7L B	제22(당)기		제21(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I .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82,184,786		189,673,162
1 . 전 기 이 월 미 처 리 결 손 금	189,673,162		272,621,196	
2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0		0	
3 .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 중 간 배 당 금	0		0	
6 . 당 기 순 이익	271,857,948		82,948,034	
표.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0		0
1 . 임의적립금 이입액	0		0	
2.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0		0	
3 . 이 익 준 비 금 이 입 액	0		0	
4 . 재평가적립금 이입액	0		0	
5 . 자본준비금 이입액	0		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2,184,786		189,673,162

# 제6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정관 변경(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호, 제35조 제1호

-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정관 변경 사유

- 법령사항
  - o 협동조합 기본법 / 시행령 법령사항 준수
  - o 기타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현행화
- 표준정관 준수
- 오타수정
- * 참고 사항

	정 관	규 약	규 정	
01.74	총회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	총회(대의원총회)	이사회	
의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정관 변경(안)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7조( <mark>탈퇴조합원</mark> 의 손실액 부담) ① ②	제17조( <mark>탈퇴·제명조합원</mark> 의 손실액 부담) ① - ②	- 표준정관 오기로 수정
제18조(출자) ①	제18조(출자) ①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사항 반영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항 순서 조정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② ③	- 표준정관 준수 (제3항 삭제 및 항 순서 조정)
제41조(이사회) ①	제41조(이사회) ①	- 표준정관 준수 (문구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 임원의 해임 소집기한 통일 (정관 제31조제2항)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 표준정관 준수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         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 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주사업 유형 제시 권고에 따른 삽입 - 표준정관 준수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제62조(사업의 이용) ①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추가 - 항 순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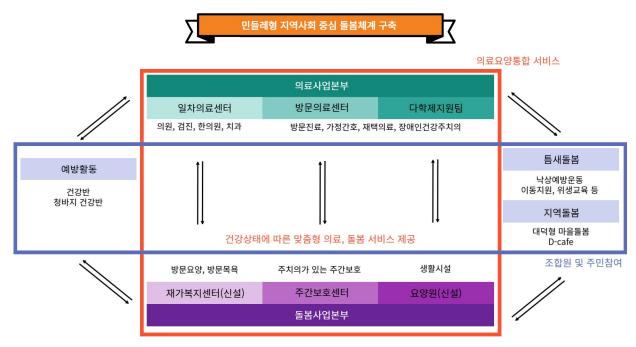
현행	개정(안)	비고
	부칙 제11조(10차 개정) 2025년 2월 22일 제17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18조(출 자),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4조(조합원의 가입), 제41조(이사회),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변경조항 추가

# 제7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주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4호

-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1. 사업방향



※통합재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시범사업(2025.하반기), 돌봄통합지원법(2026.3.) 연계방안 모색 ※틈새돌봄 예시 : 하지근력운동(낙상예방), 병원 및 시장동행, 요양보호사 활동시간 외 기저귀 교체,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준비도움 및 집안일 도움(독거의 경우), 위생교육(세수, 양치, 발씻기 등) 등

### 2.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

〈민들레형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 1) 의료요양통합 체계 구축 "주치의가 있는 돌봄"

- 의료사업본부(일차의료센터, 방문의료센터, 다학제지원팀)과 돌봄사업본부(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협력체계 구축

## 2)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역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

- 의료: 예방(건강반), 일차의료, 방문의료

- 돌봄: 예방(청바지 건강반),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 3) 조합원 및 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

- 예방활동 : 건강반

- 서로돌봄활동 : 건강리더, 틈새돌봄 ※노인건강지도사

#### 4) 신규 <u>돌봄</u>사업 안착

- 재가복지센터 :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Care-mix), 원활한 재가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Aging in place 달성

- 요양원 :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고 단기입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돌봄 구현, 생애말기와 임종기 존엄한 돌봄실현

※ 재택임종이 어려운 분들의 임종기 단기입소 등

## 3. 좋은 의료, 좋은 돌봄 실천

- 1) 2025년 민들레 '좋은 의료' 실천
- 1 환자의 고통과 불안에 공감하는 의료
  - 경청, 공감, 질문, 설명
- 2 환자의 자립적 건강생활을 돕는 의료
  - 일상생활 실천(운동, 섭생)
- 3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료
  -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 4 환자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의료
  - 안내와 진료 과정, 진료환경을 점검하고 보완
- 2) 2025년 민들레 '좋은 돌봄' 실천
  - 1 모두가 안전한 돌봄
    - 돌봄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돌봄(환경, 문화) 만들기
- 2 주체성을 강화하는 돌봄
  - 돌봄 받는 사람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돌봄 지향(선택형 프로그램 등)
- 3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
  - 관계형성, 건강증진 등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돌봄 제공
- 4 지속가능한 서로돌봄
  -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 4. 6대 핵심지표 달성 목표

## 1) 6대 핵심지표 달성 기조

6대 핵심지표는 민들레 설립 이념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기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조합원의 활동과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들레 조합원으로서 역할과 성장을 목표로 질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2) 6대 핵심지표

## ① 조합원

2024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조합원 4,714세대	총 조합원 4,900세대	일차의료센터 100명
(131세대 증가)	(증감계 186명)	기타 86명

#### ② 출자금

2024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출자금 누계액 1,252,060,000원	1,300,000,000원 (증감계 4,794만원)	신규조합원 1,000만원 정기증가 3,794만원 기타

## ③ 건강리더

2024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354명	누적 369명	건강리더 역할 모색
(15명 증가)	(증가 15명)	(자원봉사, 건강조사원 등)

## ④ 건강반

2024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총 38개	40개 반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반원 280명	240명	조정될 수 있음.

## 5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2024년 말 기준	목표	비고
234세대	260세대	일차의료센터 16명
(26세대 감소)	(증감계 26세대)	기타 10명

## ⑥ 자원봉사

2024년 말 기준	목표	비고
연인원 332명 봉사시간 861시간	연인원 340명 봉사시간 860시간	주간보호센터, 취약계층 봉사 등

## 5. 단위 부서별 사업계획

## i . 의료사업본부

1) 일차의료센터

(1) 민들레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기기 관련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 활용	-의료장비(혈액분석기,대장암 검사 키트등)중 보유하고 있는 신속 검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진료 환자 관리	-진료대기 시간의 효율적인 관리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친밀감 갖기	-데스크 순서와 만성질환교육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 점검하기(듀얼모니터이므로 같은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 는지 확인 후 안되면 추가 모니터 설치)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해주기 "힘드셨겠네요"
의료서비스사업목표	수익 창출 관리	매출목표 3%상승	-예방접종, 골다공증 주사 등 예약환자 관리로 이탈되거나 못 맞는 환자가 없도록 관리하기
	조합원 관리	조합원 가입(30명) 스스로 조합원(5명)	-조합 관련 자료 비치하여 조합 홍보 -접수 시 조합원 유무 확인 후 조합 안내. 설명
	팀워크 관리	직원 간의 연대	-원장과 직원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추진 (연 1회 또는 상하반기)

## (2) 민들레건강검진센터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기기 관련	-의료 장비 관리 시스템	-내시경 장비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가 매일 장비체크하기 -신규도입 장비 메뉴얼 숙지 및 관리 잘하기
	진료 환자 관리	-검진 질 향상	-각 검사실로 안내 시 수검자와 눈 맞춤과 정확한 안내로 수검자이동 혼선 생기지 않게 하기 -수검자 대기시간 감축 및 대기시간 안내 중간 중간 드리기 -내시경 및 검사 진행 시 모든 세팅이 완전히 갖추어진 후 환자호명해서 검사 실시 -새로운 장비(위·대장내시경, 골밀도, 안저검사기) 구입으로 신속한 검진과 진단 정확도 증가시키기 -검진 인력 재배치 및 업무효율 증가시켜서 신속한 결과 통보 -대장내시경 확인 전화 시 결과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나오셔서 진료받으시라고 설명드리기
의료서 비스 사 업목표	수익 창출 관리	-매출 목표 7%상승 (수가 인상율 4%)	-모든 요일(토요일 포함) 대장내시경 3건 진행 (연 총 70건 정도 증가 예정) -대장내시경 취소율을 감소를 위한 안내 철저 (대장약 설명 시 : 취소불가, 변경 시 적어도 3~4일 전 연락)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 검토 -2~10월까지 끊임없는 전화안내로 검진 이용자 늘리기 -오전 업무시작, 오후 업무시작 시에 스테이션에서 홀수년도 검진 독려안내 보내기(메신저 활용) -원장단에서 검진 홍보하고, 검진 독려 건수 확인해서 의료사업 본부장에게 보고 -전년, 전전년도 검진 건수 비교로 부족 시 증가방법 논의하기 (월 1회 정기회의) -각 사업소에 검진 홍보물 게시하기 -소개 방문 시 선물(수건) 제공해 검진센터 소개 촉진하기 -심장초음파 권장하기
	조합원 관리	-조합원 건강예방차원으로 검진 챙기기	-가입목표 : 조합원 50명, 후원자조합원 3명 -검진 예약하시는 조합원분들께 갑상선 초음파 or 혈관 초음파 선택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드리기 -2해째 방문하시는 조합원분들께 서비스 + 수건 챙겨서 드리기

## (3) 민들레한의원

(3)	인글데인 분류	목표	실행계획
	진료 관리	-환자중심의료 -적정진료	-첩약복용환자 관리를 위한 통화 -내원 6개월 이전 환자 상태관리 전화 -처치 후 설명(부항처치 후 관리 및 복약법 설명)
이 먜	의료 서비스	-좋은 의료 : 환자의 불안과 아픔에 공감하는 의료 -환자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환자의 통증과 불편함에 대해 공감하면서 부드러운 말씨로 응대해 주기 -환자들이 침상에서 오르내릴 때 살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 1층까지 살펴드리기 -환자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진료할 때 댁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나 섭생법 알려드리기 -한의원 올라오실때 1층과 2층사이계단옆 벽에 <b>안전바설치</b> -처치실 침대- side rail있는 침대로(낙상위험있음) -초진, 주말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녹용 첩약 환자에게 한방파스 1세트 지급
보서 비 스 사 업 목 표	연 관 관	-근무자들의 화합 -내원자의 안전과 편안함 -경제적, 효율적 운영	-연 2회 직원 회식 -월 1회 의약품, 의료소모품 재고파악과 정리 -의약품, 의료소모품, 기타 비품의 적정 구매와 사용 -원내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 -퇴근 시 전기 및 시설물 점검으로 안전 생활화 -공진단 할인 행사 공고 및 홍보(설날, 어버이날, 추석, 한여름, 수능 기간에 조합 홈페이지와 조합원 문자발송 외) -내원환자에게 민들레카톡 채널 깔아드리기 -3,300만원 / 월
	조합원 관리	-기존 조합원의 소속감과 조합에 대한 신뢰도 향상 -신규 조합원 확보	-내원 환자 접수시 조합원 여부 확인 및 조합 정보 제공과 홍보 -비급여 진료 상담 시 조합원 혜택 홍보 및 가입 권유 (조합원 가입: 10명, 후원자조합원: 가입 2명) -기존 조합원에게 후원자조합원 혜택 정보 안내

## (4) 민들레치과의원

	분류	목표	실행계획
	의료 기기 관련	-노후 의료 장비 교체 -진료 환경 개선(리모델링)	-자외선 소독기 교체 -환경 개선 : 공기청정기, 청소기 구입, 쇼파교체 등 ※향후 리모델링 계획
의료 서비	진료 환자 관리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 -정기적 치주관리를 통한 잇몸질환 예방 -스켈링 & RP: 100건/월	-정기 검진과 리콜 문자 발송하기 -스켈링 후 차트에 담당자 기록과 환자 상태 기록하여 내부 공유
스 사 업 목 표	수익 창출 관리	-월 수입 목표 전년대비 5% 상승 -구강검진 챙기기 연 500 건	-진료 시 구강검진 안내하기 -구강검진 환자 진료로 이어지도록 하기 -전체 조합원 대상 구강검진과 연 1회 치석 제거(보험) 알림 문자 발송하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진행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진행 -비급여진료 할인 이벤트 (5%)
	조합원 관리	-조합원 유무 확인하기 -조합원가입 10명 -스스로조합가입 2명 -수요일 활동	-접수, 수납 시 조합원 가입여부 확인, 신규 조합원 가입 안내하기 -주간보호센터 정기적방문(분기별 상담진행) -지센과 협업하여 방문활동 -잇솔질 교육 (건강반, 조합원, 어린이집 등), 치과방문 예약신청 팀별, 개인별 가능

#### 2) 다학제지워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5년 가치기반 지역사회 연대활동	자체	2025.01. ~ 2025.12.

#### 사업개요

민들레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의료돌봄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 여러 직역 전문가의 협력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업무(가치기반 민들레 내외의 연계 협력사업)

#### o 목적

-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강자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연대하고자 함

#### o 주요사업내용

1. 장애인건강지키미 플랫폼 사업(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2천 만원

다학제장애인주치의 사례관리 24년 21명, 25명 30명				
구성 및 교육(5명 이상)	다학제 전문직간 협력역량측정(사전사후 2회)			
운영회의	12회 (월 1회) 목표			
대상자	30명			
내용	일반건강관리 포괄평가(1년에 2회) 계획수립(1회)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사후 1회) 웰빙측정도구(2회)			
	개별/그룹 작업치료-사회복지상담, 구강건강관리 등			

#### 민관연계 네트워크 활동: 10회 실시

- 다부문 (보건의료/복지/문화/학교/일터 등 연계협력)
- 민관을 아우르는 지역 내 인적, 물적, 정보자원을 동원해 장애인건강관리 지원

### 마을 건강리더 네트워크 교육 목표건수 8건

교육 8일 (4일 이론 및 수료식 + 4일 현장견학)

- 민들레*대덕구자원봉사센터*대전보건대*(한남대)조합원
- 현장교육 : 대덕구장애인건강네트워크 기관 활용(안) (민들레청바지공작소 / 대덕구 장애인복지관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 - 여성장애인연대 /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 이론교육 : 자원봉사자교육 + 장애인건강관리(민들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건강반 활동으로 함께, 5-11월 월 2회씩

## 마을 건강리더 활동 (정기 월 1회 서로건강돌봄 봉사단) 12건

#### 2. 일차의료센터 업무지원

- 지역사회(방문)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사례관리 청구수납 행정 지원
- 한의원 재택의료 복지사 업무 지원
- 치과 방문구강사업,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 끄트머리 심리상담사업 지원
- 의원, 검진, 방문간호 소모품관리 지원 (연 1회 엑셀)
- 3. 대덕구 노인의료돌봄사업 행정업무 (의원/한의원)
- 4. 재택방문의료 정책 및 교육 연계활동
-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재택의료협회/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 일차의료의대생 실습, 작업치료실습생/일경험 학생지도, 관련 자원봉사자 관리
- 5. 지역장애인네트워크. 지역보건의료연대 활동 행복상담소, 대전/대덕구/유성구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장애인복지 위원회 등

#### 3) 방문의료센터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5년 방문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2025. 1. ~ 2025. 12.	
	11-01-71 O		

#### 사 업 개 요

#### o 목적

- 대상자의 아픔과 불안을 공감하고, 요구를 존중하여 대상자 중심의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o 주요사업내용

- 일차의료방문진료시범사업

· 대상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분

· 내용 : 의사의 진찰 및 약처방

- 가정간호서비스

· 대상 : 퇴원환자, 말기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

· 내용 : 만성질환관리, 각종튜브관리, 수액처치, 임상검사, 임종간호 등

- 재택의료서비스

· 대상 : 요양등급이 있는 분

・내용 : 의사(월1회), 간호사(월2회), 사회복지사(수시)가 한 팀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o 추진목표

#### - 매출: 10억(2024년 9.5억)

구분	2025년 목표	
방문진료 (*동반수가포함)	1,500건	
가정간호(가정)	5,200건	
가정간호(시설)	J,2002 <u>i</u>	
재택의료(등록/관리인원)	180/100명	
(재택) 방문간호	3,000건	
사회복지	140건	

## o 추진전략

- 1) 통합돌봄사업 연계로 방문의료 대상자 발굴.
- 2)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연계.
- 3)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의료·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
- 4) 돌봄종사자(보호자,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돌봄기술을 향상시키고, 신체·인지활동과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입원 감소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2025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자체	2025. 1. ~ 2025. 12.		

#### 사업개요

#### o 목적

- 장애인의 질병예방 및 치료, 활동과 참여를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

#### o 주요사업내용

- 대상 : 경증·중증 장애인

- 내용 : 주치의 팀 기반으로 경증·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방문 및 내원, 검진, 전화나 SNS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 목표매출: 4억(24년 약3.5억)

## o 추진목표

구분	2025년 목표		
방문진료	1,100건		
방문간호	1,900건		
방문 사회복지	150건		
장애인체력인증	2회		

#### o 추진전략

대상자의 질환이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와 주요 욕구에 대해 충분히 사정하고,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건강 관리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장애인주치의 등록 대상 중 보류, 거부, 입원 등으로 서비스 중단된 대상자 들을 모니터링하여 개별화된 욕구파악 후 사업 재연계
- 2)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등록 및 건강검진, 지과주치의 서비스 연계, 예방접종 지원
- 3) 사례회의 정기화: 격월 주치의, 담당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여 사례에 대한 개입 방향 모색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4) 민관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욕구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 모색
- 5) 질병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통합적인 의료 및 복지 서비스로 확대
- 6) 장애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을 세워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운영

월	서비스	서비스 내용	비고
1	건강검진	건강검진 해당되는 자,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 중 희망 자	담당 간호사
2	2032	대덕장애인복지관 디딤돌, 대덕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담당, 팀장
3	모니터링	연락 두절, 건강 악화로 정기적인 서비스 중단 등 전체 대	담당,
	<del>-</del> 1-10	상자 서비스 여부에 대해 조사 및 서비스 재연계	담당 간호사
4	방문	거동 불편, 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치과진료 접근이 어려운	담당, 담당 간호사
	구강검진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 / 장애인치과주치의 등록	/치위생사
5	체력인증	장애인건강주치의 등록한 장애인	담당
	세탁년	대덕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디딤돌 이용자	대전장애인체력인증센터
	집단 교육	   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담당 간호사,
6	입고 쓰푹	경에진 신경천의 <del>포</del> 퍼 	담당 주치의
7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 월 1회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방문	담당 간호사
,	모니터링	간호	담당 주치의
9		대덕장애인복지관 수시 모니터링 및 건강 상태 확인	담당
	도가 미		
10	독감 및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 예방접종 여부 확인	담당
11	코로나예방접종	대덕장애인복지관 디딤돌, 주간보호센터 대상	
10	체력인증	체력인증 체중, 키, 허리둘레, 인바디 등	담당
12			대전장애인체력인증센터
	사업평가	- 사업 평가회	담당, 연계 기관

### ii. 돌봄사업본부

#### 1) 요양원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요양원	자체	2025. 1. ~ 2025. 12.		
사 업 개 요				

## o 설치 필요성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1%가 의료적 필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택의료나 재가돌봄이 부족해 입원. 단기입소와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의료지원 기능이 강화된 노인요양원 설치 필요.
- 요양원 입소자의 25% 이상은 높은 의료적 필요가 있음. 의료지원 기능이 강화된 노인요양원 설치 필요.

#### o 설치 목적

노인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ο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추진목표	- 요양원 설립으로 지역돌봄에서 시설돌봄까지 확장 - 민들레형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업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품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 질병관리나 건강유지상 신체삽입관이나 튜브 등을 관리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의료기관 퇴원 후 지속적인 간호와 요양을 필요로 하나, 보호자 사정으로 가정간호가 어려 운 어르신
특징	- 주치의와 의료지원이 강화된 요양원으로, 요양병원입원을 줄이고 단기입소 활용하여 지역사회돌봄이 이어지도록 함 - 생애말기와 임종기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임종기케어와 연계 (재택임종이 어려운 분들의 임종기 단기입소 등)
시설 위치와 규모	대덕구 중리서로 83, 럭키스포츠프라자 8층(중리동)
설치 일정	연내 개소 예정(2025년)

- 조합원 및 지역주민 참여 : '좋은 돌봄'을 실현하는 노인요양원
- 의료·요양·돌봄 통합제공 : '주치의 기반' 민들레의료기관 및 방문진료 연계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제공 : 통합재가연계(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 2) 주간보호센터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민들레주간보호센터	<b>가체</b>	2025. 1. ~ 2025. 12.

#### 사업개요

#### o 목적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간<del>존중돌봄</del>(휴머니튜드케어)을 제공한다.

#### o 사업 목표

- · 민들레 조합원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노인 복지 통합 돌봄 실현
- 주치의 활동, 자원봉사 체계, 기능에 따른 분반 및 의사 존중에 따른 선택형 프로그램
- · 일상적인 평가 시스템과 점검을 통한 운영 시스템 공고화
- 일상적 평가 체계 유지 및 반영, 다양한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효율적 업무 체계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 확대 기반 마련
- 등록 인원 70명, 일일 평균 이용 인원 상반기 50명, 하반기 55명 달성 목표

### o 총사업비

928,021,820원

#### o 수행인력

센터장	사회 복지사	작업 치료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운전원	총 합계
1	1	1	1	9	1	1	15

#### o 사업내용

- 기관 운영 사업
  - : 기관관리, 회계·인력·시설·장비 관리
- 노인장기요양사업
  - :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안전 및 건강 도모, 일상지원
- 프로그램 운영사업
  - : 인지능력,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욕구 및 특성 맞춤형 지원
- 직원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 : 직원교육, 복지 증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 : 자원활동가, 지역사회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기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속적인 기관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서비스 유지

#### 3) 재가복지센터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재가복지센터	자체	2025. 1. ~ 2025. 12.

#### 사업개요

#### o 설치 필요성

-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인지저하와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과거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 돌봄은 더는 개인이나 가정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어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크게 늘었음.
- 또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이 들어서도 익숙한 지역과 네트워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절실한 때임.
- 조합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돌봄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커지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조합원이 증가하였음.

### o 설치 목적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심신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함. 그동안 조합의 돌봄 관련한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기여함.

#### o 주요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시설 위치와 규모	대덕구 중리서로 83,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중리동)
설치 일정	6월 개소 예정
특징	민들레의료사협 일차의료센터, 방문의료센터, 다학제팀 등과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통합적인 돌봄 제공

#### o 사업 영역

구 분	사업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생활과 관련된 동작과 능력의 자립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능력을 유지·상승시킨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정서 유지를 돕는 활동을 제공한다.
방문 <del>목욕</del>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깨끗하고 편안하게 청결을 유지해 건강관리를 돕는다.

#### o 사업 대상

관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받은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지역사회와 조합원 등 사업소 홍보로 이용자 확보
- 조합 사업소를 활용한 홍보와 연계
- 이용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 돌봄

#### 4) 지역돌봄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대덕형 마을돌봄	대덕구	2025. 01 ~ 2025. 12	

#### 사업개요

#### ① 경증치매어르신돌봄: 치매를 예방하는 '기억건강학교'

- o 목적 :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와 연대·협력 구조로 사각지대 없는 경증치매어르신 통합돌봄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예방 및 노인과 돌봄가족의 삶의 질 향상
- o 사업목표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를 예방하길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인지건강서비스 제공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20,000,000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 보조금
서비스제공비	12,000,000	인지활동서비스
서비스운영비	8,000,000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ICT활용비, 데이터사용료, 인지활동도구 이용료 등

## o 사업내용

- 대상 :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거나 치매를 예방하길 희망하는 대덕구에 사는 60세이상 어르신 *우선순위 : 노인(75세이상 우선),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기간 및 장소 : 1월 ~ 12월 / 서비스 대상 가정 내
- 내용
- ① (서비스 신청 최초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② (서비스 이용 전, 후) ICT_Cogmate 뇌건강강측정(사전/사후)
- ③ (주1회, 총25회 이용) 인지활동서비스 : 인지학습교구(노메이드) 서비스 제공, 신체운동 서비스 제공

#### o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해 현수막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 서비스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 서비스제공인력 실무회의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한 만족도 평가

#### ② 사회적 입원 예방사업 : 퇴원환자 등 돌봄

- o 목적: 의료기관 퇴원 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 도모 및 자립생활 유지
- o 사업목표 : 수술 등의 이유로 퇴원한 환자에게 자립생활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연계 제공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30,000,000	*대덕구형 마을돌봄사업 보조금		
서비스제공비	22,500,000	방문재활, 일시보호		
서비스운영비	7,500,000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식사대용식, 회의 및 간담회 등		

#### o 사업내용

- 대상 : 자립생활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우선순위 : 노인(75세이상 우선),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등
- 기간 및 장소 : 1월 ~ 12월 / 서비스 대상 가정 내 또는 요양병원
- 내용
- ① (서비스 신청 최초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② (주2회, 총6회 이용) 방문재활(물리치료), 심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자 모집을 위해 현수막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 2, 3차 병원 및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품질관리, 이용자 확보
- 서비스이용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점검을 통한 만족도 평가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D-CAFE (치매카페)	㈜한국에자이	2025. 03 ~ 2025. 12	

#### 사업개요

#### o 목적

-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문화 조성

### o 사업목표

- 치매 당사자와 가족, 주민 간의 교류와 관계망 형성
- 치매이해 및 돌봄기법을 배움으로써 당사자 및 돌봄 가족 삶의 질 향상
-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실험)

#### o 총사업비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3,000,000	* (주)한국에자이 보조금
프로그램진행비	2,100,000	치매정보 공유 및 휴머니튜드케어 배우기
운영비	900,000	홍보 및 다과, 환경조성비

#### o 사업내용

- 대상 : 조합원 중 치매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 주민 등

- 기간 : 3월~11월 - 장소 : 청바지공작소

- 내용: D-CAFE(Dementia Cefe, 치매카페)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 편안하게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 추진일정

간담회	의제발굴	마 <del>을</del> 실험	평가
3월	4월	5월~10월	11월

- 조합원, 지역주민,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이용 가족에게 사업소개 및 홍보
- 치매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 간 협력관계 형성

#### 4-1) 지역돌봄팀-조합원건강이음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건강반 · 청바지건강반	<u> </u>	2025. 5. ~ 2025. 11.	

#### 사업개요

#### o <del>목</del>적

- 조합원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해 건강자치력 향상
- 건강취약계층(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의 건강자치력 향상 및 서로돌봄 실천

#### o 사업목표

- 건강반: 예산 범위 내 모집(약 40개반, 250여명)
- 청바지 건강반 :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65세이상 조합원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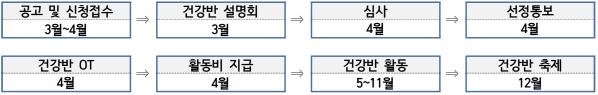
#### o 총사업비: 2,420만원

항목	산 <del>출</del> 내역	금액	비고
거가하도니	40개 건강반×30만원	12,000,000	
건강활동비	검진인원100명×3만원	3,000,000	추가지원
강사비	4개반×24회×6만원(1시간)	5,760,000	건강프로그램
경시비	4회×20만원(2시간)	800,000	건강학교
다과비	60명×4회×2천원	480,000	건강학교
거가하네	80명×24회×1천원	1,920,000	건강프로그램
건강화폐	60명×4회×1천원	240,000	건강학교
합계		24,200,000	

#### o 사업내용

### ① 건강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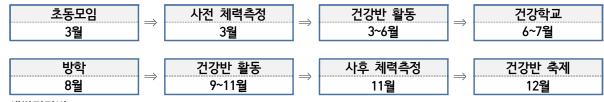
- 내용 : 조합원 및 지역주민 5인 이상이 건강모임 구성 후 월 2회 이상 건강증진과 예방활동 진행
- 방법 :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 건강활동비 지원
- 지원 : 선정시 30만원, 상반기(~6월) 건강관리(민들레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실적에 따라 7월경 추가지원
- 추진일정



*건강반 모니터링(5~6월), 건강반 간담회(11월), 설문조사(12월) 예정

### ② 청바지건강반

- 내용 :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조합원 80명
- 방법 : 건강프로그램(체조, 취미 등), 건강학교(뇌건강, 웰다잉 등)
- 추진일정



## o 새싹건강반

-5인 이상 건강모임을 구성하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임활동 지원 (문의: 조합원건강이음 담당자)

- 조합원외 지역주민으로 대상 확대
- 5인 이상 모임 구성 못한 조합원 활동 지원
- 건강반별 상호 교류 확대
- <청바지 건강반> SPPB(간단신체기능검사) 사전 및 사후 실시
- <청바지 건강반> 건강반 어르신들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신설(노래교실반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 유도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조합원 중심 운영 및 조합원 참여	<b>가체</b>	2025. 1. ~ 2025. 12.

### 사업개요

#### o 목적

조합의 근간인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고 임직원 역량 강화로 조합원의 조직 활동 확대 및 지역주민 참여 확장

#### o 사업목표

- 조합원 참여 확대, 주민참여 확장
- 조합 사업(보건예방활동, 의료사업, 돌봄사업)의 확산
- 임·직원·조합원 역량 강화

#### o 총사업비(단위: 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8,500,000	
신입조합원 환영회	1,000,000	25만원×4회(분기1회)
조합원 워크숍	1,500,000	요양원설립준비, 대관료, 식사, 강사비 등
예비 대의원/임원 학교	1,000,000	50만원×2회(상·하반기)
걷기행사	1,500,000	
송년회 & 건강반 축제	3,500,000	

#### o 사업내용

- 신입조합원 환영회 : 총 4회(분기 1회), 조합 및 사업소개, '좋은 의료, 좋은 돌봄', 조합원 건강수요·자원조사 등
- 조합원 워크숍: 민들레 요양원 추진 워크숍, 좋은 돌봄, 민들레형 요양원(역할, 기능), 자금조달, 조합원참여 등
- 예비 대의원·임원 학교 : 10기 대의원, 13기 임원 활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진행
- 걷기행사 : 조합원 건강실천 행사(걷기행사로 진행예정)
- 송년회 & 건강반 축제 : 2025년 민들레 활동 결산

#### o 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입조합원 환영회	•			•			•			•
조합원 워크숍		•								
예비 대의원 및 임원 학교					•				•	
걷기 행사			•							
송년회 & 건강반 축제										•

-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제공
- 예비 임원 및 대의원 학교를 통한 차기 리더십 발굴·육성

## ⅲ. 경영지원실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홍보 활동	자체	2025. 1. ~ 2025. 12.		

## 사 업 개 요

## o <del>목</del>적

- 조합활동 안내
- 홍보채널 다각화로 민들레 인지도 향상

## o 사업내용

- 조합활동 홍보
- 홈페이지 및 SNS관리
-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홍보채널 다각화 및 활성화
- 홍보물품 : 조합원에게 실용적인 물품 제작

## o 추진목표

- 홍보물 제작
- 매월 신규조합원 편지 및 홍보물품 발송
- 홍보채널 게시물 수시로 업로드
- 예산(안)

항목	산출내역	금액	
홈페이지	홈페이지 호스팅 연장(12개월) = 132,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 2,000,000원	2,132,000원	
홍보물	홍보물 제작 = 3,000,000원	3,000,000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160,000원	160,000원	
우편발송	신규조합원 등 우편발송 = 200,000원	200,000원	
문자	신규, 탈퇴, 증자, 행사 안내 등 = 2,000,000원	2,000,000원	
	합 계		

사 업 명	위탁기관/자체	수행기간
기부금	<b>가체</b>	2025. 1. ~ 2025. 12.

## 사 업 개 요

## o 목적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등으로 지역사회 보건예방사업 활동

## o 사업목표

- 지역사회 활동 및 외부기관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 o 예산(안)

		취약계층의료비지원							
구분	운영비	의료사업 본부	외부기관 연계	건강반 활동비	조각	다학제 지원팀	외부기관 연계	시설 개선금	합계
금액 (만원)	350	2,700	880	1,700	500	100	900	400	7,530
비율(%)	5	36	12	22	7	1	12	5	100

※예비비 18,778원

## o 주요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및 보건예방활동 지원과 상담 (이주노동자, 미등록아동, 성매매피해여성,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가족등 취약계층)
- 조각 사용관리
- 지역사회, 복지관, 기업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

## 1. 2025년 예산 수립 기조

각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사업본부**'와 '**돌봄사업본부**' 체계로 조직개편하여 수입예산은 사업소별 목표치를 반영하여 정하였으며, 매출증대에 따른 인건비, 원가, 교육훈련 등 관리비 지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사업본부는 일차의료센터, 방문의료센터, 다학제지원팀으로 다각적인 의료지원, 지역사회 내 양·한방 방문의료 확대와 치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 매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으며, 검진센터는 노후화된 의료기기 교체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사업본부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지역돌봄팀으로 지역 내 돌봄구축과 조합원의 관계망확장과 함께 노인요양원설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민들레형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으로 질병예방, 주치의, 재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좋은의료· 좋은돌봄을 준비하는 해로 기대합니다.

## 2. 예산 총칙

<제1조> 본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2025 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77. 2)
관	항	목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의원, 검진	2,361,411,306	2,432,253,645	2,443,916,498	2,559,997,126
		한의원	278,491,904	306,341,094	360,306,356	396,599,826
		치 과	477,317,390	501,183,259	426,286,295	448,177,049
	사업 수익	지역사회의료센터	895,773,574	950,000,000	1,306,115,723	1,400,000,000
		주간보호센터	399,435,340	565,960,140	670,028,530	717,724,320
수입		조합원건강이음센터				99,630,120
		경영지원실	5,875,460	5,000,000	2,250,000	4,400,000
		이자수익	2,171,390	258,000	278,986	284,000
	사업외	정부지원 및 보조금	26,800,000	3,000,000	72,747,160	5,000,000
	수익	기부금	34,449,420	3,500,000	457,296	500,000
		잡이익	1,693,320	780,000	996,128	195,000
		수입합계	4,483,419,104	4,768,276,138	5,283,382,972	5,632,507,440
	사 업 비	교육,회의,연대, 조직,홍보	23,818,151	46,411,000	25,286,163	68,720,000
		매출원가	347,401,557	402,622,780	409,258,471	379,089,738
	관 리	인건비 (급여,퇴직연금,잡급, 인적용역)	2,744,880,075	2,877,030,800	3,255,654,440	3,510,066,625
지출	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326,310,047	347,031,600	330,293,291	451,053,335
		기타 판관비	843,423,824	920,550,473	862,714,941	1,018,879,468
	기타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등)	95,504,370	88,081,599	81,580,462	80,985,786
		법인세	19,133,046		46,737,256	
		지출합계	4,400,471,070	4,681,728,252	5,011,525,024	5,508,794,952
	손익합계	(수입합계-지출합계)	82,948,034	86,547,886	271,857,948	123,712,489

	민들레통합(프로	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I.매 출 액	5,208,903,402	5,626,528,440
▷ 의원 수입금	1,729,188,517	1,784,937,385
▷ 검진 수입금	714,727,981	775,059,741
▷ 한의원 수입금	360,306,356	396,599,826
▷ 치과 수입금	426,286,295	448,177,049
▷ 방문의료센터 수입금	1,306,115,723	1,400,000,000
▷ 주간보호센터 수입금	670,028,530	717,724,320
▷ 돌봄사업본부 수입금	0	99,630,120
▷ 조합본부 수입금	250,000	500,000
▷ 임대료 수입금	2,000,000	3,900,000
Ⅱ.매 출 원 가	409,258,471	379,089,738
▷ 의원/검진	228,723,648	232,343,323
▷ 한의원	44,977,612	49,508,183
▷ 치과	27,286,003	28,687,200
▷ 방문의료센터	63,953,986	68,551,032
▷ 주간보호센터	44,317,222	0
Ⅲ.매 출 총 이 익	4,799,644,931	5,247,438,702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4,473,948,835	5,048,719,428
▷ 직 원 급 여	3,026,588,420	3,266,309,745
- 의원/검진	1,224,977,500	1,264,776,000
- 한의원	202,765,280	232,173,360
- 치과	261,417,530	255,259,200
- 방문의료센터	671,221,350	706,217,985
- 주간보호센터	388,937,440	472,584,480
- 돌봄사업본부	136,149,480	217,723,920
- 경영지원실	141,119,840	117,574,800
▷ 잡 급	1,398,000	
- 한의원	1,398,000	
▷ 퇴 직 급 여	203,799,030	222,356,880
- 의원/검진	70,334,270	74,456,520
- 한의원	14,468,730	15,504,960
- 치과	17,746,610	18,058,320
- 방문의료센터	48,012,480	50,062,680
- 주간보호센터	31,404,410	39,381,360

게거 그니므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돌봄사업본부	10,262,330	15,095,400		
- 경영지원실	11,570,200	9,797,640		
▷ 복리 후 생 비	219,855,905	245,747,000		
- 의원/검진	81,619,096	86,734,320		
- 한의원	15,277,020	19,098,480		
- 치과	16,906,150	18,860,400		
- 방문의료센터	40,567,868	50,693,760		
- 주간보호센터	24,102,120	27,272,240		
- 돌봄사업본부	30,967,660	29,980,440		
- 경영지원실	10,415,990	13,107,360		
▷ 여 비 교 통 비	31,060,946	33,150,000		
- 의원/검진	215,000	150,000		
- 한의원	234,450			
- 치과				
- 방문의료센터	15,748,188	18,000,000		
- 주간보호센터	10,533,784	12,600,000		
- 돌봄사업본부	896,854	1,800,000		
- 경영지원실	3,432,670	600,000		
▷ 통 신 비	8,973,513	10,022,400		
- 의원/검진	3,095,266	3,108,000		
- 한의원	469,450	480,000		
- 치과	630,695	672,000		
- 방문의료센터	3,270,140	3,408,000		
- 주간보호센터	742,369	960,000		
- 돌봄사업본부	274,585	960,000		
- 경영지원실	491,008	434,400		
▷ 수 도 광 열 비	4,413,613	4,344,000		
- 의원/검진	848,390	1,020,000		
- 한의원	463,390	480,000		
- 치과	372,660	0		
- 방문의료센터	493,750	564,000		
- 주간보호센터	1,677,221	1,680,00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558,202	600,000		

게건 기다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전 력 비	21,813,191	22,152,000			
- 의원/검진	10,867,069	10,920,000			
- 한의원	3,700,483	3,840,000			
- 치과	4,110,714	4,080,000			
- 방문의료센터	1,572,029	1,752,00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24,275	0			
- 경영지원실	1,538,621	1,560,000			
▷ 세 금 과 공 과 금	86,972,440	132,889,900			
- 의원/검진	28,285,610	38,959,920			
- 한의원	7,031,120	8,846,630			
- 치과	7,883,220	30,037,440			
- 방문의료센터	16,884,080	16,081,580			
- 주간보호센터	12,654,720	9,614,520			
- 돌봄사업본부	5,748,330	9,614,520			
- 경영지원실	8,485,360	20,728,640			
▷ 감 가 상 각 비	240,921,169	359,013,355			
- 의원/검진	63,144,039	71,844,039			
- 한의원	10,570,892	10,750,892			
- 치과	12,151,392	12,301,392			
- 방문의료센터	3,906,666	4,416,592			
- 주간보호센터	28,864,364	32,508,780			
- 돌봄사업본부	4,923,169	4,923,180			
- 경영지원실	117,360,647	222,268,480			
▷ 지 급 임 차 료	89,372,122	92,040,000			
- 의원/검진	28,600,000	29,040,000			
- 한의원					
- 치과	15,600,000	15,600,00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31,972,122	31,200,000			
- 돌봄사업본부	13,200,000	16,200,000			
- 경영지원실	0	0			
▷ 수 선 비	31,382,200	36,500,000			
- 의원/검진	19,740,500	5,400,000			

게건 기묘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한의원	289,600	1,350,000		
- 치과	0	1,350,000		
- 방문의료센터	23,000	0		
- 주간보호센터	8,706,000	8,000,00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2,623,100	20,400,000		
▷ 보험료	58,967,306	71,087,140		
- 의원/검진	23,455,880	25,109,860		
- 한의원	4,054,180	4,383,640		
- 치과	5,040,850	7,530,320		
- 방문의료센터	8,662,660	11,250,960		
- 주간보호센터	10,480,216	12,028,800		
- 돌봄사업본부	2,502,180	5,581,920		
- 경영지원실	4,771,340	5,201,640		
▷ 차 량 유 지 비	3,587,500	3,900,000		
- 의원/검진	0	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3,587,500	3,600,000		
- 돌봄사업본부	0	300,000		
- 경영지원실	0	0		
▷ 운 반 비	381,300	336,000		
- 의원/검진	55,500	36,000		
- 한의원	174,000	60,00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3,000	0		
- 주간보호센터	3,000	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145,800	240,000		
▷ 교 육 훈 련 비	3,012,000	13,620,000		
- 의원/검진	1,183,000	1,800,000		
- 한의원	238,000	1,800,000		
- 치과	430,000	1,800,000		

게정 가모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방문의료센터	828,000	2,520,000		
- 주간보호센터	304,000	600,000		
- 돌봄사업본부	0	4,800,000		
- 경영지원실	29,000	300,000		
▷ 도서 인쇄비	4,925,590	4,940,000		
- 의원/검진	996,380	1,200,000		
- 한의원	160,800	0		
- 치과	240,000	240,00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2,145,000	500,000		
- 경영지원실	1,383,410	3,000,000		
▷ 회 의 비	3,595,390	15,020,000		
- 의원/검진	1,332,550	5,040,000		
- 한의원	152,200	600,000		
- 치과	64,600	480,000		
- 방문의료센터	856,900	2,880,000		
- 주간보호센터	319,140	1,800,000		
- 돌봄사업본부	45,000	2,220,000		
- 경영지원실	825,000	2,000,000		
▷ 소 모 품 비	69,974,826	59,604,000		
- 의원/검진	18,292,156	11,640,000		
- 한의원	3,315,890	2,244,000		
- 치과	7,718,850	1,320,000		
- 방문의료센터	7,541,960	1,200,000		
- 주간보호센터	25,400,460	18,000,000		
- 돌봄사업본부	1,351,460	1,200,000		
- 경영지원실	6,354,050	24,000,000		
▷ 지 급 수 수 료	284,899,033	354,106,585		
- 의원/검진	130,153,149	353,100,000		
- 한의원	3,542,055	131,160,000		
- 치과	41,569,073	3,600,000		
- 방문의료센터	60,495,672	42,000,000		
- 주간보호센터	8,886,325	71,160,000		

7171 710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돌봄사업본부	1,916,500	180,000	
- 경영지원실	38,336,259	42,000,000	
▷ 건 물 관 리 비	18,464,070	19,764,000	
- 의원/검진	1,584,000	1,584,000	
- 한의원	0	0	
- 치과	480,000	480,000	
- 방문의료센터	0		
- 주간보호센터	12,854,030	13,200,000	
- 돌봄사업본부	3,546,040	4,500,000	
- 경영지원실	0	0	
▷ 무형고정자산상각	1,843,008	1,843,008	
- 의원/검진	112,608	112,608	
- 한의원	270,000	270,00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1,460,400	1,460,400	
▷ 연 대 활 동 비	1,577,740	4,700,000	
- 의원/검진	0	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98,000	200,00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239,000	1,500,000	
- 경영지원실	1,240,740	3,000,000	
▷ 조 직 활 동 비	10,396,210	20,540,000	
- 의원/검진	0	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9,373,740	15,540,000	
- 경영지원실	1,022,470	5,000,000	

-11-71 -11 CT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홍 보 활 동 비	6,704,823	14,900,000	
- 의원/검진	0	0	
- 한의원	14,500	300,000	
- 치과	0	300,00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1,500,000	1,800,000	
- 돌봄사업본부	40,700		
- 경영지원실	5,149,623	6,000,000	
▷ 인 적 용 역 비	21,118,990	21,400,000	
- 의원/검진	3,725,580	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2,000,000	2,400,000	
- 주간보호센터	7,953,410	8,400,000	
- 돌봄사업본부	5,640,000	7,960,000	
- 경영지원실	1,800,000	2,640,000	
▷ 기 부 금 사 업 비	19,066,426	40,000,000	
- 의원/검진	0	40,000,00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12,660,346	0	
- 경영지원실	6,406,080	40,000,000	
▷ 기 부 금 사 업 비 지 원 금	-19,066,426	-40,000,000	
▷ 외 주 용 역 비	17,950,500	18,000,000	
- 의원/검진	0	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17,950,500	18,000,00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0	0	

게거 기묘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V. 영 업 이 익	325,696,096	205,226,754	
- 의원/검진	502,575,307	569,961,536	
- 한의원	46,738,704	42,368,560	
- 치과	6,637,948	31,506,287	
- 방문의료센터	359,975,993	382,754,351	
- 주간보호센터	-3,121,823	-61,051,320	
- 돌봄사업본부	-208,694,633	-257,861,540	
- 경영지원실	-378,415,400	-502,451,120	
VI. 영 업 외 수 익	74,479,570	5,979,000	
▷ 이자수익	278,986	284,000	
- 의원/검진	11,719	15,000	
- 한의원	5,892	7,000	
- 치과	7,693	8,000	
- 방문의료센터	15,017	4,000	
- 주간보호센터	39,754	40,000	
- 돌봄사업본부	8,728	10,000	
- 경영지원실	190,183	200,000	
▷ 정부지원및보조금	72,747,160	5,000,000	
- 의원/검진	100,000	0	
- 한의원	100,000	0	
- 치과	100,000	0	
- 방문의료센터	730,000	1,000,00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6,550,000	3,000,000	
- 경영지원실	65,167,160	1,000,000	
▷ 기부금 수입	457,296	500,000	
- 의원/검진	0	0	
- 한의원	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457,296	500,000	
▷ 잡이익	996,128	195,000	
- 의원/검진	137	30,000	

케킹	민들레통합(프로젝트 제외)		
계정 과목	2024년 통합결산	2025년 통합예산	
- 한의원	590,334	30,000	
- 치과	19,712	30,000	
- 방문의료센터	65	15,000	
- 주간보호센터	172,855	30,000	
- 돌봄사업본부	9	30,000	
- 경영지원실	213,016	30,000	
VII.영업의 비용	81,580,462	80,985,786	
▷ 이자비용	71,795,995	80,385,786	
- 경영지원실	71,795,995	80,385,786	
▷ 기부금	400,000	500,000	
- 경영지원실	400,000	500,000	
▷ 보상비	2,700,000	0	
- 의원/검진	2,200,000	0	
- 주간보호센터	500,000	0	
▷ 유형자산처분신	5,666,667	0	
- 의원/검진	5,666,667	0	
▷ 잡손실	527,800	100,000	
- 의원/검진	13,340	0	
- 한의원	37,560	0	
- 치과	0	0	
- 방문의료센터	0	0	
- 주간보호센터	0	0	
- 돌봄사업본부	0	0	
- 경영지원실	476,900	100,000	
VII. 법인세차감전이익	318,595,204	123,712,488	
- 의원/검진	494,807,156	568,122,536	
- 한의원	46,907,370	41,346,680	
- 치과	6,765,353	30,575,047	
- 방문의료센터	360,721,075	375,704,551	
- 주간보호센터	-3,409,214	-64,902,920	
- 돌봄사업본부	-202,135,896	-256,409,260	
- 경영지원실	-385,054,700	-570,769,146	
⋉. 법인세	46,737,256	0	
- 손익	-271,857,948	123,712,488	

# 제8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2025년 회계연도 차입금 최고 한도는 현재의 차입금 1,217,518,653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액 기준 25억원 이내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 관계조항: 정관 제33조 제10호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2024년 차입금 내역 및 상환 계획

2024. 12. 31 기준

(단위: 원)

구분		차입액		최초	ru → ¬1=L	이율	2025년
		2023년도	2024년도	대출일	대출기한	(연, %)	상환 계획
조합원 차입금		70,000,000	60,000,000	′13.4.부터	1년 단위 (상환 연장)	4.00	요청시
금 & 권 차 입	유동화 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40,000,000	240,000,000	′18.04.26.	′25.06.26.	4.140	2년에 20%상환
	한빛신협	303,680,000	274,030,000	′19.01.11.	′29.01.11.	3.75	월248만원
	신한은행	247,574,660	148,738,653	′19.11.27.	'25.11.26. (연장가능)	5.783	마이너스
	신한 <del>은</del> 행	106,500,000	88,500,000	′19.11.27.	'25.11.22. (연장가능)	4.700	월150만원
	신한은행 (신보보증)	45,000,000	15,000,000	′20.06.30.	′25.06.17.	5.250	월250만원
	신한은행	253,250,000	214,250,000	′22.05.27.	'25.05.27. (연장가능)	4.910	월325만원
	신한은행 (신보보증)	100,000,000	90,000,000	′22.11.23.	'25.11.14. (연장가능)	4.780	1년에 10% 상환
	신한은행 (신보보증)	123,000,000	87,000,000	′23.03.28.	'26.03.28. (연장가능)	5.430	월300만원
총 계		1,489,004,660	1,217,518,653	-	-	-	

## 기타 특별결의

*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노인요양원 설립 특별결의

#### ■ 목적

o '요양주치의'를 핵심기능으로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주치의, 재활과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나이들기(Aging in place)' 실현

#### ■ 목표

- o 주치의와 의료지원이 강화된 요양원 :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돌봄으로 연계
- o 민들레형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 의료·요양·돌봄 통합제공, 통합재가, 좋은돌봄실현

#### ■ 위원회

- o 노인요양원설립 조합원추진위원회 구성
- 노인요양원의 비전 : 좋은 돌봄 기준, 지역 돌봄수요 파악, 공간구성 등
- 조합원 및 지역주민 참여촉진 : 출자, 홍보, 이용 등

#### ■ 현황

- o 럭키스포츠프라자 건물의 1개층을 매수하여 추진할 예정(주간보호센터와 시너지 기대)
- 위치 : 대덕구 중리서로 83(중리동), 8층
- 규모: 899.21㎡
- 매매비용 : 약 6억원 예상 - 인테리어 등 기타비용 : 미정

#### ■ 일정(안)

- o 2월~3월: 건물매입(조합원 출자 / 증자)
- o 상반기: 조합원추진위원회 구성·활동
- o 하반기: 내부시설 인테리어 및 행정절차 진행 ※추진상황에 따라 실제 개소시점은 유동적 임.

#### ■ 민들레 노인요양원만의 특징

- o 의료·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 주치의가 있는 돌봄
- o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역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 o 지역사회 돌봄수요에 따른 특화서비스 : 임종기케어 연계 등
- o 좋은 돌봄: 모두가 안전한 돌봄, 주체성을 강화하는 돌봄,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 지속가능한 서로돌봄 실현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
나와 우리, 모두를 돌보는 일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인가 사항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41(2024. 4. 19.)

# 정 관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 문 제 1 장 칙 (제1조~제9조) 총 조 합 원 (제10조~제17조) 제 2 장 제 3 장 출 자 (제18조~제26조)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제44조) 제 5 장 임 원 과 직 원 (제45조~제60조) 제 6 장 사 업 과 집 행 (제61조~제63조) 제 7 장 회 계 (세64조~세68조) 제 8 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제72조) 부 칙

####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 단체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민들레의료생협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민들레의료생협의 전통을 이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 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갈 것이다.

####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 ② 의료기관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2층(법동)
-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indlle.org)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자
-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 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 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 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 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최저 출좌 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⑦ 조합원이 추가납입(증좌)한 출자금이 1좌에 미만일 경우 그 출자금은 1좌를 충족시 까지 출자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며, 출자 예치금은 출자금으로 포함치 아니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출자예치금이 1좌를 충족시에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한다.
-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

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 1. 시설 사용료
  - 2. 조합가입 수수료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 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4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에서 110명 이하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 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 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휴업 또는 계속
- 8. 조합원의 제명
-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 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 3. 조합원의 제명
  -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모바일메신저, 문자 등)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 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의 2.「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총회에서 차기 임원 선출시까지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 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 1. 정관, 규약, 규정
- 2. 사업결산보고서
-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 **제59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0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기관 개설·운영, 요양시설, 보육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시설
    -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 아.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5. 임대사업
-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 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한다.

-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 **제62조(사업의 이용)** ①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 가 있는 자
-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②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
- 제66조(기부금) ①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 ②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 ④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 **제67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귀속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
- **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
- 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 개정
- 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5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의 의사), 제44조 (임원의 정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부 개정 (2019.4.22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제8조(7차 개정)** 2020년 5월 9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4조(탈퇴),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45조(임원의 정수),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2020.06.17.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제9조(8차 개정)** 2021년 2월 27일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8조(출자), 제28조(대의원총회), 제41조(이사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61조(사업의 종류)(2021.03.25.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제10조(9차 개정) 2024년 2월 24일 제2조(목적), 제6조(공고방법), 제11조(조합원의 가입), 제14조 (탈퇴), 제15조(제명),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18조(출자),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제30조(정기총회),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4조(총회의 의사), 제35조(특별의결사항), 제37조 (대리인의 될 자격), 제41조(이사회),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3조(이사회의 의사), 제45조(임원의 정수), 제47조(임원의 정수),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5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56조(임원의 보수 등),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운영의 공개), 제61조(사업의 종류), 제62조(사업의 이용),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4조(회계연도 등),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총회운영규약
- 출자좌수 감소 규약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 과태금에 관한 규약

## 총회운영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하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무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 2. 소집통지 일자
- 3. 개최일시 및 장소
-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 5. 회의의 목적사항
-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제7조(의결사항),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제15조(의사록) 일부개정

##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7.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2.27〉

- ② 〈삭제, 2021.02.27.〉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의 총회 승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 2.27〉
- 1. 조합원 자격 상실
- 2. 탈퇴 및 제명
- 3. 〈삭제, 2021.02.27.〉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 출자금 감소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기본좌수 이하일 경우
-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21년 2월 27일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일부개정

##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 평가시에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개정 2021.02.27.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제2항의5, 제18조제6항 조합원인 법인의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단체장에게 위임을 득 한자만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2.27>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단체의 정의) 일부개정 **제3조(2차 개정)** 2020년 2월 27일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일부개정

##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정 2013.02.23. 개정 2019.02.23.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경비 또는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납입기일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때
- 2.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해 과태금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1조(목적) 일부개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

의 원 042)638-9012

한의원 042)638-9013

**치과의원** 042)638-2275

건강검진센터 042)716-5002

방문의료센터 042)716-7001

조합사무실 042)638-90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83, 5층(중리동)

**주간보호센터** 042)716-7004

**돌봄사업본부** 042)638-9043

대표번호 042) 638-9042 / fax 042) 638-9055 http://www.mindlle.org



Mind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